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56호

2018. 3. 22. (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81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811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681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6813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6814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제6815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681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제681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6818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22
제6819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6820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82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6822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제6823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6824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6825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30
제682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32
제682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68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6829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6830호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6831호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6832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683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683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683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683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683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6838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제6839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47
제6840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684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68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684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684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684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6846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6847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6848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58
제6849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685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6851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62

[입법예고]

제2018-633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4
제2018-73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
제2018-74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8
제2018-75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01
제2018-75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2

◆ 고 시

제2018-78호 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4
제2018-79호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7
제2018-80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124
제2018-81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 구계획 승인(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24
제2018-82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27
제2018-84호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8

◆ 공 고

제2018-674호 2018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161
제2018-67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63
제2018-69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66
제2018-692호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167
제2018-69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70
제2018-6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80
제2018-70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81

제2018-7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99
제2018-705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200
제2018-708호 설계업·감리업 등록공고	201
제2018-70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201
제2018-710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02
제2018-71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203
제2018-714호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안)	206
제2018-72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208
제2018-722호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09
제2018-7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13
제2018-725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215
제2018-750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216

◆ 구 고 시

제2018-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217
제2018-1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관악구)	221
제2018-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223
제2018-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224
제2018-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227

◆ 구 공 고

제2018-299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용산구)	231
제2018-246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성동구)	232
제2018-30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한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광진구)	233
제2018-2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중랑구)	236
제2018-39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열람공고(강서구)	239
제2018-39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서구)	242
제2018-484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243

제2018-492호 방배지구중심(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서초구)	247
제2018-503호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249
제2018-505호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서초구)	249
제2018-3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251
제2018-33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252

◆ 사업소고시

제2018-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4
제2018-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4
제2018-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5
제2018-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55

◆ 사업소공고

제2018-61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56
제2018-8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공고(노원소방서)	258
제2018-1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안)(송파소방서)	259

◆ 기 타

제2018-8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0
제2018-8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1
제2018-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1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1호****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18년 3월 22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 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화·지속화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조사(매 2년)’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2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실무적 정책개발·입안 역량 강화 및 정책기획 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

시 도 명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서울	3.5 → 3.5% (-)	14 → 14.5% (+0.5%p.)	33 → 34.5% (+1.5%p.)	34 → 35.5% (+1.5%p.)	14.5 → 11% (△3.5%p.)	1%

※ 기준비율의 개정으로 실제 직급조정은 별도 검토 및 시행 필요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3호****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창업지원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립대 창업 전담조직 ‘창업지원단’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재학생 및 학내외 구성원에 대한 대학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제1항에 제12호 “창업지원단” 추가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4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 있는 시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 나. 입법 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 입법안 작성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전 협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서울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접수기관
5.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입법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2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3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4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6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때(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이행 및 정비

제19조(자치법규 교육 등) 시장은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지 여부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

제21조(입법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시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기여하는 등 서울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22조(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連署)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실제 법제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의 체계를 개편하고, 입법안 작성 유의사항을 신설 하되 입법안 작성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입안심사기준표’를 ‘규칙’으로 이관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권익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정의 조항에 ‘법령’을 추가로 정의함(제1조, 제2조)
- 나. 조문의 순서를 법제실무 처리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함(제4조~제11조)
- 다. 조례에 입법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입안심사기준표’ 등 입법안 작성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이관(제4조, 제11조)
- 라. 한자 병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함(제6조,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5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μ m 이하인 먼지
 -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μ m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감군 주의보) ① 시장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농도가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만이라도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 및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조치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mu\text{g}/\text{m}^3$)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상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비고>

1.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나. 오존

(단위 : ppm)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대상 물질	오존 (O ₃)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 으로 대체	· 가급적 실내활동
	취약군	—	—	· 일사량이 높은 14 시~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 근무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 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 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비고〉 1.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2.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6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 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 가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 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 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오존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 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 만일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오존농도가 0.3 ppm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오존농도가 0.5 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 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 상 0.5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의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3]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7조, 제8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노천 소각금지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권고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별표 4]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제8조의2 관련)

가. 미세먼지(PM-2.5) 농도기준

대상 물질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민감군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미만인 때

<비고>

-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의 권역별 농도가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나. 조치사항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나.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권고 다.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주·정차시 공회전 자제 권장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장의 ‘서울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의 하나인 민감군 주의보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농도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민감군 및 취약군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통해 민감군과 취약군의 구분 명확화(제2조)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

나.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를 마련하고, 발령·해제기준 및 조치사항 신설(제8조의2, 별표 4)

다. 예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추가 및 변경(별표 1~별표 3)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6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준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 나.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제3조)
- 다. 청년공간의 사용 및 이용제한을 규정함(제5조)
- 라. 청년공간의 민간에의 위탁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를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호 단서)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8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을 말한다.
3.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범지역의 선정) 시장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 시장은 시범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평가결과의 환류)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의 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최적의 사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범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범사업 운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

나.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다. 시장은 주민이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제7조)

라. 시장은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함(제8조)

마.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19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음
- 나. 본 기금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주민생활개선, 기존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통해 교류창구 유지, 신뢰기반조성 기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음
- 다. 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인 기근·질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제5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0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 중 “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자 함
- 나.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9호 신설)
- 나.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5조제3항제5호)
- 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13조)
- 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제3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1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2호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대일 노동복합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상에 전태일 열사 기념 및 시민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되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에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을 추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3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며, 제4조제9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를 제5조제3항제9호로 하고, 제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인 기업 및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며 조례에 인용된 법규 중 폐지되거나 법규명이 변경된 사안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업 및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제5조제3항제8호)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일부 문구를 변경된 법규명에 맞게 개정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4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5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이란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할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후견을 말한다.
2.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후견을 말한다.
3.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이하 “후견 비용”이라 한다) 지원

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후견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4.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후견심판 청구) 시장은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시장은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2. 미성년후견 인식 개선 사업
3.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후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 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후견 비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4조)
- 다. 후견 비용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라. 시장의 후견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사업 등 후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6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 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 및 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환수)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의 조사결과 제9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위임·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사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3조)
-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을 하여야함(제4조, 제5조)
- 다. 공영장례 지원방법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함(제7조)
- 라. 시장은 공영장례의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차별을 금지하고”를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를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등”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대받은 장애인”을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학대”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피해장애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쉽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562호, ' 17. 2. 8. 공포, ' 17. 8. 9. 시행)됨에 따라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쉽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
- 나. 이에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장애인 쉽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쉽터를 확충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추가로 규정함(제2조)
- 나.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쉽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8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철도 공채”를 “도시철도공채”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 교통부령” 을 “따른 국토교통부령”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 을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부령” 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변경함(제3조제2항)

나.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변경함(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829호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민” 으로 한다.

제1조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시민” 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제5항 신설)

나. 시민의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중의 의무를 규정함(제4조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0호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속공무원”을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다. 신발(부츠 포함)

라. 부속물 :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및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나. 흉장
 다.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단속근무시”를 “단속 근무시”로, “규정에 의한 계절별”을 “계절별”로 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
 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 ③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 중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 조례는 2007년 일부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문상 연계된 법령과 법률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복 착용 및 기간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제3조제1항제1호)
 나. 제복의 착용기간 중 하계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춘계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함(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1호****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절한 예산배정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수행 시 한복 등 전통복식이 사용될 경우, 복식 고증과 재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복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장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 고증과 재연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예산배정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제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2호****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교육·홍보 및 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6조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금융자금을 조달하여”를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분할하여 상환받는”을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나.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가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의 금융자금 외의 민간자금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 나.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 추진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의2 신설)
- 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제20조, 제2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방” 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을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서울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장려 및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 나. 공무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2 신설)
- 다. 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을 위해 1일의 출산지원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제24조제1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조사’를 실시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고자 함(제4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을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호텔업자에서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80일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
-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촉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8호****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가족 상담 및” 을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진달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은 다각도의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함. 이에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이 제안됨

2. 주요내용

-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명문화함(제5조제2항제7호)
- 자살예방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5조제3항)
- 가지조의 조번호 수정(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39호****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한의학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학”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의 생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의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학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학육성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학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의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학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학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학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학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학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나.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학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7조)
다.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시장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0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근거규정 신설(제9조의2)

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제14조의제3항제4호)

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재난 취약계층과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재난예방사업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또한,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제49조제2항)

나. 재난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56조제3항)

다.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를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개정규정은 2018. 6. 27.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7. 12. 26.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 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상생협약은 개별당사자의 임의적 사항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상생협약 체결의 구체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16조제2항)
-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으로 정함(제2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주거지보전사업” 이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 터, 골목길 및 생활상 등 해당 주거지의 특성 보전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시기, 매매가격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착공신고를 한 때에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 2. 매매가격은 영 제68조제2항(대통령령 제28628호)에 따라 정하되, 건축비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부지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 현황측량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인계한 이후에 총액의 60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83조(법률 제14943호)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법률 제14943호)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제3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1. 법(법률 제1494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등
2.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지역

제6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법률 제1494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신축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제6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9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개량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정주지의 특성을 보전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개발구역 내에서 일부 지역을 존치하는 경우 주택개량비용을 보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신설함
- 나.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입시기, 매입가격 등을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별도로 정함
- 다.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지역에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도시정비기금의 사용처에 제38조제9항에 따라 보조하는 주택개량비용을 추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4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 나.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제28조제2항 진단부 중 “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벽면 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자를 시장으로까지 확대하여 수거보상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함(제4조제4항)
- 나.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포함함(제11조제2항)
- 다.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권한을 시장에게 까지 확대함(제28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5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6호****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제5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7호****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6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0호”를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주택법」 개정 사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주택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수정사항을 반영함 (제7조의2 및 제8조의2)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일부 조문을 삭제.이동함(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8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인에게 공급하기로 지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촉진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주거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제1조부터 제4조)
- 나.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6조, 제8조)
- 다. 청년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제9조)
- 라.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849호****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주택법」 개정사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조항을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로 이동·신설함

서울특별시조례 제6850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가. 공공이 이용하는 공원을 점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 부과하고 있으나, 관람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용료 징수 규정이 없음
- 다. 이에 사익을 추구하는 유료행사의 경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2] 이용료 규정에 유료행사 관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나. 이용료는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15%를 부과하도록 하며, 공간을 점용한 점용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관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인사혁신처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91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5항 중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을 최소 1명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묘지·화장장·납골당”을 “묘지·화장장·봉안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불입하고”를 “납입하고”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라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

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교육원 내의 식당, 이·미용실, 커피숍, 사우나실·프로그램운영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 시설 등을 제3자와 계약하거나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의” 를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시설을” 로, “제3자와의 계약서에 당해 계약자 이외의 자가 운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을 “임대 또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운영”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3조를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다목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0조(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각호” 를 각각 “각 호” 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 을 “(위원의 위촉 해제)”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2조(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중 “①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을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5인” 을 “2명을 포함한 1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1)부시장” 을 “행정1부시장”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인” 을 “2명” 으로, “자” 를 “사람”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자가” 를 “사람이”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 “목”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관리담당관으로”를 “대기정책과로”로, “02-2115-7759”를 “02-2133-1025”로 하며, “대기관리담당관실 (02-2115-7763)”을 “대기정책과 (02-2133-3659)”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을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를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나.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개선
 - 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
 -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33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4569호, 2017.2.8.제정, 2018.2.9.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위 및 규제 완화,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함(제5조)

- 다.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제7조)
- 라.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 마.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음(제11조)
- 바.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7조)
-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치지역 추가지정,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까지 완화(제3조)
- 아.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제20조)
- 자.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30일) 설정(제24조)
- 차.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30일) 설정(제25조)
- 카.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를 설치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제26~31조)
- 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상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음 (제35조)
- 파.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음(제44조)
- 하.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45조)
- 거.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46조)
- 너.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앞선할 수 있음.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앞선할 수 있음(제47조)
- 더. 공동이용시설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명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명시 (제48조)

- 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 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구청장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주차대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제52조)
- 버.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제53조)
- 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정비지원기구로 함(제54조)
- 어. 구청장은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5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1일까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가. 전자우편(이메일) : 2004ho@seoul.go.kr

나. 주소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환경개선과

다. 팩스 : 02) 2133-0753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전화 : 02)2133-72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담당 이동호								
4. 근거법령명등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관 련 규제수	23 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이해관계자 : 구청장, 시장 등								
6. 규제존속기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시 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규정 신설] ① 용어의정의(안 제2조제4호 ~ 제6호) - ‘권리가액’, ‘권리가산정기준일’, ‘특정무허가건축물’ 의 정의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안 제3조) - 조례에 의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구체적 대상범위 확대 조정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③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11조) - 법 1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로서 철거 외의 구체적 안전조치를 명시함. ④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안 제13조, 별표1) - 빈집이 철거된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정당한 보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임. - 별표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으로 6개의 평가항목을 정함(별표 1) ⑤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안 제14조) -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⑥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안 제15조 제1항 후문)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안 제18조 제1항) - 지정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신탁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기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정함. ⑧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안 제19조 제1항 후문) -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 안 제19조제1항 후문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해야								

- 한다” 는 부분을 규정함.
- ⑨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제1항)
- 주민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⑩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안 제21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인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정함
- ⑪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안 제22조)
- 조합설립인가내용 중 경미한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⑫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안 제23조)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을 주민합의서 및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함.
- ⑬ 분양신청의 절차 등(안 제32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절차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분양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조례로 정함.
- 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안 제33조)
-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
- ⑮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안 제34조 제1항 후문)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 ⑯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안 제35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건축물 층수)을 조례로 정함.
- 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안 제36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수립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함.
- 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안 제37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조례로 정함.
- ⑲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안 제3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기행자의 관리처분 방법(분양대상자 선정기준)을 조례로 정함.
- ⑳ 주택공급 기준 등(안 제39조)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 방법(주택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함.
- ㉑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안 제41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임대주택 공급 순위를 조례로 정함.
 - '권리가액' 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
- ㉒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44조 제2항)
- 안 제44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토록 의무를 부과
- ㉓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50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에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도록 하는 특례 규정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_1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영 제3조제1호제나목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조례에서 그 해당 기준의 범위를 1.8배로 적용.(단독주택 10호→18호, 다세대 20세대→36세대 등)
- 조례에 의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구체적 대상범위에 들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한 사항임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어도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다세대 주택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구체적 대상범위와 관계없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하므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특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을 시행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영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 2) 기존주택이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 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법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2.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제15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4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_3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빈집의 우범화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관리 사항 필요
- 법(제1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로서 철거 외의 구체적 안전조치(하명)를 명시하고 있는 것(안 제11조 각 호)
- 법 및 영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34조제1항 후문에서 조례로 "주택 및 상가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와 관련)"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하여, 빈집의 우범화 방지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중 철거계획서에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빈집을 관리토록 함.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빈집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을 예방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를 하는 사항으로 빈집 소유자와 협의 통하거나
 -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등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하여 60일이 지난 경과 후 철거 가능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높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8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8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빈집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우범화 예방에 따른 비용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빈집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우범화 예방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빈집정비계획에서 빈집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고, 구청장은 이에 따라 안전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법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3. 제1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_1건

1. 규제 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구청장이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법 제11조 빈집의 철거)
- 위의 보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기준 마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빈집 직권철거의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공정한 선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자격의 제한요건, 기준설정 등에 따른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6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26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규제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 비용분석 :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 편익분석

○ 우수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불량한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제외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4. 빈집정비사업 부문_제1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부문_제2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_3건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조합설립인가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 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경미한 변경의 행정절차 간소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의 성격이 큼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각종 인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은 신고처리 하고 있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영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10.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 11.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영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⑥ 생략

○ 영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4. 생략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의 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10.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5. 제18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_1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신탁업자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사업시행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앞서 사업 및 추정가액에 대한 사항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지정개발자의 책임 있는 사업진행 및 지정개발자 선정의 판단기준 제공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산출로 지정개발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수준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전에 필요로 하므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법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①~② (생략)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6. 제19조 (시공자 등의 선정방법)-1건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 “ ~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시공자 선정시, 입찰 기준이 될 설계도서를 정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시공자 입찰의 기준 설계도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시공사 선정시, 입찰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시공사 선정의 그 방법과 절차를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므로 시행 가능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① (생략)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7. 제2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_2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주민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사항

2. 기타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인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각종 서류가 제출되도록 함.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주민합의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의 현황 검토 및 매도청구에 대한 검토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주민합의체의 분쟁 최소화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구역에 대한 검토 및 매도청구 대상지를 명시하여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검토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주민합의체를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규약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이 인허가시 검토하므로 실현 가능한 사항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 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4. 규제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합의체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4.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6.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생략 ~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생략~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8. 제23조(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_1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구성 시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

- 는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정하는 방식 규정
- 피규제자의 범위·대상을 정하고 있음.
 - 1.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서 또는 운영규약
 - 2.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정관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저층주거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권익보호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권익보호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에 대한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미부여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나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여건을 부여하므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13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생략~1. ~ 2. (생략)

- 3.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 4. ~ 9. (생략)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9. 제32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1건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절차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
 - 1. 분양신청 안내문
 -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분양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
 -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분양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
 -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분양절차의 혼선방지
 - 소유권 및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하여 허위 토지등소유자를 구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사업시행자나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항으로 통보 및 명시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영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면적
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4.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5.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6.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0. 제35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_1건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건축물 층수)을 조례로 정하는 것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함.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2.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 저층주거지의 나홀로 아파트 양산으로 인근 저층 주거민의 상실감 증대 및 주거환경 저하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저층주거지의 돌출경관 방지 및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서울 지역의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1. 제36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1건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수립하여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함.

1.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 대상세입자 명부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분양신청서 사본을 첨부

-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 필요성
 -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설정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함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관리처분계획시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현가능함.
- 3. 규제와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해당 사항 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해당 사항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영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2. 제37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_1건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조례로 정하는 것
 -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를 설정
 - 대형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이나,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실현가능함.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영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영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2. ~7. (생략)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3. 제38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제39조(주택공급 기준 등)_2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정 범위의 시민은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됨.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6. 생략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과소필지에 대한 투기 및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가액 및 권리가 산정 기준일 설정이 필요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과소필지에 대한 투기 및 지분쪼개기 방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나, 투기의 방지를 위해 권리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4. 제41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_1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임대주택 공급 순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무주택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 보호를 위해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무주택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 보호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일정 범위의 시민은 조례에 의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공급대상자에서 후순위 지위를 받게 됨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무주택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실현 가능한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5. 제44조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_1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치하여, 향후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위해 사용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제원 확보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안으로 실현가능함.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16. 제5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_1건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에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 건축법상 정비가 불가능한 대지의 정비를 위해 유도 방안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의 정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건축규제 완화를 받지 못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규제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거나 난 개발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 사항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 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36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청, 은평학습장 등 학습장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4조 제2항 신설)

나.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학습비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5조 제1항~제2항 개정)

다.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36조 신설)

라.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안 제37조 전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92, FAX: 02)2133-1013, E-mail:jng0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45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국궁장 이용 및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에 대한 세부 이용료를 신설하고, 공원시설 이용에 대한 예약취소율을 낮추고 실사용자의 예약기회 확대를 위해 사전 납부된 입장료 및 이용료에 대해 차등적 환불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원시설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국궁장 이용료를 “1일(3시간) 3,000원, 1개월 30,000원” 으로 함
 - 입장권발매행사 이용료를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해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로 함
- 사전 납부된 입장료 및 이용료에 대해 취소일자별 기준을 달리하여 환불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25, FAX: 2133-1080, E-mail: freeddy@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과장 유영봉, 팀장 이용남, 담당 고우용								
4. 근거법령명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 도시공원 시설중 유료시설 사전 예약자								
6. 규제존속기한	규정 폐지시까지								
7. 신설 규제의 내용	사전 납부된 입장료 및 이용료에 대해 취소일자별 기준을 달리하여 환불함을 규정함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함)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서울시내 캠핑장 이용이 집중되는 성수기(4~10월) 선점을 위하여 여러 캠핑장에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등 허수 예약자로 인해 실사용자 이용기회 박탈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에 따라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이용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 전일 취소율(36.9%)이 높아 실제 이용희망자의 예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17년 4~10월 중랑캠핑장의 경우 전체 취소율 46.9% 중 이용일 1일전 취소율이 36.9%(전체 취소율의 78.7%)로 취소율 저감을 위해 규제필요.
- 취소율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일 1일전 취소율을 낮추는 방안이 효과적이므로 현재 이용일 1일전 취소시 전액 환불 규정을 취소일자별 부분 환불 규정으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허위예약 사례 예방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실제 이용희망자의 예약 기회 확대로 이용률 제고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조례 규칙 개정 완료 후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환불규정 도입 가능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 캠핑장의 경우 부분 환불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일자별 환불기준을 준용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III.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해당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5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청소년시설)에 신규 개관시설과 기존시설의 주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표 1(청소년시설) 신규 개관시설 신설, 기존시설 정보 수정

- 신설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은평청소년증장기센터,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 수정 : 주소 변경, 시설의 기능 수정(문구), 시설종류 재분류

○ 조항 재분류 : 안 제12조, 제13조

- ‘제4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 ‘제3장 운영의 위탁’ 으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담당관(전화 : 2133-4114, FAX : 2133-1430, 이메일 : goeu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5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건축법 내용 반영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안 제49조, 제50조 신설)

- 시·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자(보조)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안 제50조제3항)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용자(보조)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정함

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규정 변경(안 제6조의3제4항)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2제2항)

-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제1항가목 ~ 다목)

- 공개공지 설치 대상건축물 산정기준과 설치면적 산정기준의 조문 통일화

바. 맞벽건축 기준 관련 조문 정비 및 완화기준 신설(안 제32조제2호 및 제4호)

-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 맞벽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인동거리) 완화규정 신설(안 제35조제4항제4호)

-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구현을 위한 인동거리 완화규정을 신설

아. 종전 개정(’16. 7. 14.) 시 발생된 조문의 오기 정정(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우)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2133-7101, 팩스 : 02-2133-0750 E-mail : cmr214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8호

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85호(2006. 5. 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29호(2006. 9. 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암사역사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인접한 암사동 유적지 및 한강생태공원과 연계된 문화공간, 관리사무소, 주민참여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여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

3. 면 적 : 110,19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4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0,198.00	44,851.93	13동	1,438.23	1,888.23	39	110,198.00	53,721.34	16동	1,659.53	1,659.53	85	
기 반 시 설	소계	20,444.73	20,444.73					18,714.05	18,714.05					감 1,730.68㎡
	광장	7,762.18	7,762.18					6,685.65	6,685.65					감 1,076.53㎡
	도로	12,682.55	12,682.55					12,028.40	12,028.40					감 654.15㎡
조경시설		10,327.39	10,327.39				12	12,562.55	12,562.55				3	증 2,235.16㎡
휴양시설		28.28	28.28				5	6,962.64	6,962.64				8	증 6,934.36㎡
유흥시설		0	0					954.25	954.25				1	신설 954.25㎡
운동시설		2,072.69	2,072.69											폐지
교양시설		7,272.49	7,272.49				1	10,150.19	10,150.19	12동			4	증 2,877.70㎡
편익시설		4,145.12	4,145.12				21	4,176.87	4,176.87	2동			20	증 31.75㎡
관리시설		561.24	561.24				6	200.79	200.79	2동			49	감 360.45㎡
녹지및기타		65,346.06					0	56,476.66	56,476.66					감 8,869.40㎡
시 설 율 (제한없음)		(44,851.93 / 110,198.00) × 100 =40.70%						(53,721.34 / 110,198.00) × 100 =48.75%						
건 폐 율 (제한없음)		(1,438.23 / 110,198.00) × 100 =1.31%						(1,659.53 / 110,198.00) × 100 =1.51%						

나.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합 계				110,198	44,851.93		13동	1,438.23	1,888.23	39			110,198	53,721.34	조적외	16동	1,659.53	1,659.53	85	
기 반 시 설	소 계			20,444.73	20,444.73								18,714.05	18,714.05						감1,730.68㎡
	도 로			12,682.55	12,682.55								11,885.98	11,885.98						감 654.15㎡
	광 장			7,762.18	7,762.18								6,685.65	6,685.65						감1,076.53㎡
	상징광장	가	2개소	1,425.20	1,425.20						가	암사동194전	1,875.83							
		가-1	암사동213대	1,054.51	1,054.51															
		가-2	암사동195전	370.69	370.69															
	중심광장	나	4개소	2,383.86	2,383.86						나	6개소	725.29							
		나-1	암사동197전	415.41	415.41						나-1	암사동211,212, 221,219	260.63							
		나-2	암사동 199-3도	907.92	907.92						나-2	암사동197전	167.87							
		나-3	암사동199-3전	346.36	346.36						나-3	암사동197전	77.31							
		나-4	암사동 136-1전	714.17	714.17						나-4	암사동133-3전	37.97							
											나-5	암사동194전	81.00							
											나-6	암사동205답	100.51							
	진입광장	다	암사동 137-9전	1,172.14	1,172.14						다		3,465.31							
	부진입광장	라	4개소	2,780.98	2,780.98						라	3개소	619.22							
		라-1	암사동 219-1잡	1,975.07	1,975.07						라-1	암사동207-7잡	128.84							
		라-2	암사동207-2잡	553.03	553.03						라-2	암사동252-7답	323.28							
		라-3	암사동192전	197.7	197.7						라-3	암사동137전	167.10							
		라-4	암사동 143-4전	55.18	55.18															
조 경 시 설	소 계			10,327.39	10,327.39					12			12,562.55	12,562.55				3	증 2,235.16㎡	
	상징조형물	①	상장광장 가-1내							1	①	부진입광장 라-3						1		
	조형물	②	중심광장 나-1내							1										
	입구조형물	③	2개소							2	②							2		
		③-1	부진입광장라-3 내								②-1	상징광장 가내								
	③-2	부진입광장라-4 내								②-2	부진입광장라- 2내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열 주	④	부진입광장라-2내							3										폐지
	분 수	마	2개소	307.61	307.61															
		마-1	암사동 133-3전	80.59	80.59															
		마-2	임시덤2-7-4답	227.02	227.02															
	목 교	바	2개소	(19.2)	(19.2)						마	3개소	49.25	49.25						
		바-1	암사동36-2전	(6.30)	(6.30)						마-1	암사동197전	29.25	29.25						
		바-2	암사동211-2답	(12.82)	(12.82)						마-2	암사동134-2천	10.00	10.00						
											마-3	암사동134-2천	10.00	10.00						
	석교	사	암사동197전	(20.57)	(20.57)						바	암사동133-3전	127.50	127.50						
	조류관찰대	⑤	암사동211-2답	(50.00)	(50.00)					1										폐지
	생태계류	아	전지역	1,791.39	1,791.39						사	2개소	2,504.05	2,477.20						
											사-1	전지역	1,630.59	1,630.59						
											사-2	전지역	846.61	846.61						
	전망데크	⑥	2개소	(47.50)	(47.50)					2										폐지
		⑥-1	연못내	(17.50)	(17.50)															
		⑥-2	연못내	(30.00)	(30.00)															
	접안시설	⑦	연못내	(9.00)	(9.00)					2										폐지
	다목적잔디마당	자	암사동211-2답	4136.06	4136.06						아	암사동211-3답 외	8,941.63	8,941.63						
	바닥분수										자	암사동194전	(384.00)	(384.00)						신설
	연 못	차	암사동213대	4092.33	4092.33						차	암사동133-3전, 134-2천	630.72	630.72						
	화 계										카	암사동133-3전	336.25	336.25						신설
휴 양 시 설	소 계			28.28	28.28					5			6,962.64	6,962.64					8	증 6,934.36㎡
	피크닉마당 (프로그래밍캠핑)										타	3개소	5,436.01	5,436.01						신설
											타-1	암사동135-2,3,19 7전외	2,002.93	2,002.93						
											타-2	암사동197전	1,164.36	1,164.36						
											타-3	암사동198,199-2, 211-2	2,268.72	2,268.72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										파	8개소	1,482.89	1,482.89						신설	
											파-1	암사동193전	72.00	72.00							
											파-2	암사동193전	102.50	102.50							
											파-3	암사동195전	102.50	102.50							
											파-4	암사동211-1답	27.85	27.85							
											파-5	암사동211-2답	120.59	120.59							
											파-6	암사동188대	107.98	107.98							
											파-7	암사동134-2천	95.76	95.76							
											파-8	암사동133전	853.71	853.71							
	플랜터	㉔	암사동136-1	(714.17)	(714.17)					1											폐지
	파고라	㉕	3개소	(108.00)	(108.00)					3	㉓	3개소	(48.00)	(48.00)						3	
	파고라	㉕-1	중심광장나-2내	(36.00)	(36.00)						㉓-1	휴게소	(16.00)	(16.00)							
		㉕-2	다목적잔디광장	(36.00)	(36.00)						㉓-2	휴게소	(16.00)	(16.00)							
		㉕-3	다목적잔디광장	(36.00)	(36.00)						㉓-3	모험놀이터	(16.00)	(16.00)							
	조형파고라A										㉔	휴게소내	(175.50)	(175.50)						3	신설
											㉔-1	휴게소내	(58.50)	(58.50)							
										㉔-2	휴게소내	(58.50)	(58.50)								
										㉔-3	휴게소내	(58.50)	(58.50)								
조형파고라B										㉕	유아숲놀이터	(40.49)	(40.49)						1	신설	
정자(전망대)	㉖	암사동 210임	28.28	28.28					1	하	암사동133-3전	43.74	43.74						1		
스포츠 시설	소 계			2,072.69																폐지	
	배드민턴장	카	3개소	1,616.85	1,616.85															폐지	
		카-1	암사동213대	592.72	592.72																
		카-2	암사동212잡	473.91	473.91																
		카-3	암사동212잡	550.22	550.22																
	건강원	타	암사동219-1잡	455.84	455.84															폐지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 시설	소 계												954.25	954.25					1	증 954.25㎡
	모험놀이터									거	암사동219-1잡	954.25	954.25							신설
	모험놀이시설									⑥	모험놀이터내	(257.25)							1	
교 양 시 설	소 계			7272.49	7272.49	11동	688.23	688.23	1			10,150.19	10,150.19		13동	1,272.24	1,272.24	4	증 2,877.70㎡	
	야외무대 (공연장)	파	암사동204답	1519.98	1519.98					너	암사동135-1도,2 대,3전	1,184.97	1,184.97							
	막구조파고라	⑩	야외무대내	(73.38)	(73.38)				1	⑦	공연장내	(73.38)	(73.38)						1	
	서원									더	암사동132,-1,2 전	4,681.64	4,681.64							
	서원건축물	1	암사동132-2전	3,512.32	3,512.32	11동	688.23	688.23		1	암사동136-1,2전				11동	688.23	688.23			
	전통놀이마당	하	암사동133-3전	2,240.19	2,240.19					러	암사동133-3전	1,389.37	1,389.37							
	테마정원									머	암사동195전	1,322.37	1,322.37							신설
	유아숲놀이터									버	암사동136-2전	332.63	332.63							신설
	숲체험놀이1									⑧	유아숲 놀이터내	(34.92)	(34.92)						1	
	숲체험놀이2									⑨	유아숲 놀이터내	(9.48)	(9.48)						2	
	주민참여체험관A									2	암사동203전,204 답	489.33	489.33		1동	409.27	409.27			신설
	주민참여체험장B									3	암사동204답	241.62	241.62		1동	174.74	174.74			
	선사체험마당A									서-1	암사동135,136-1 ,137-3	348.40	348.40							
	선사체험마당B									서-2	암사동 207-2답	158.47	158.47							
편 의 시 설	소 계			4,145.12	4,145.12	1동	450	600				4,176.87	4,176.87		2동	227.80	227.80	20	증 31.75㎡	
	야외탁자	⑫	부진입광장라- 1내																	폐지
	키오스크	⑬	부진입광장라- 1내																	폐지
	등의자									⑩	전지역	(23.40)	(23.40)					20		
	카페테리아	2	암사동213대	450.00	450.00	철골조	1동	450	600											폐지
	주차장	거	2개소	3,695.12	3,695.12					어	2개소	3,872.88	3,872.88							
		거-1	암사동203전	2704.90	2704.90						어-1	암사동199-2답외	2,786.14	2,786.14						
	거-2	암사동137-6전	990.22	990.22						어-2	암사동188대,192 전	1,086.74	1,086.74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푸드트럭존										저	암사동188대	76.19	76.19						신설
	화장실										4	2개소	227.80	227.80		2동	227.80	227.80		신설
											4-1	암사동195전	113.90	113.90		1동	113.9	113.9		
											4-2	암사동143-4 전	113.90	113.90		1동	113.9	113.9		
관 리 시 설	소 계			561.24	561.24		1동	300	600				200.79	200.79		2동	159.49	159.49	49	감 360.45㎡
	비지터센터	3	암사동137-9 전	561.24	561.24	철골 조	1동	300	600		5	암사동137-2 전	144.43	144.43	철골조	1동	103.13	103.13		
	창고										6		56.36	56.36		1동	56.36	56.36		
	공원명표지판										⑪	전지역							3	신설
	공원입구표지판										⑫	전지역							4	신설
	방향표지판										⑬	전지역							11	신설
	공원등										⑭	전지역							25	신설
	CCTV										⑮	전지역							6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65,346.06									56,476.66	56,476.66						감 8,869.40㎡
	녹 지		전지역	65,346.06									56,476.66	56,476.66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12,682.55) 12,028.40				
변경		계				3,541.26				
신설	중로	3	1	13	260.83	3,541.2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	
당초 변경		계			(758.5) 33.0 1,356.22	(6,157.80) 5,748.25				
폐지	소로	1류	1	(10.5)	(253.0)	2656.50	진입로	공원경계	중심광장 나-2	
폐지			2	(10.0)	(58.5)	585.00	진입로	상징광장 가-1	산책로 42	
폐지		2류	1	(8.8)	(63.5)	558.80	시설연결로	야외공연장	중심광장 나-2	
폐지			2	(8.0)	(91.0)	728.00	진입로	상징광장 가-1	소로 3-3	
당초 변경		(3류)	1	(6.0)	(83.5)	(501.0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2-1	
		3류	1	6.0	86.70	529.37	연결로	중로 3-1	공연장	
당초 변경		“	2	(6.0)	(83.5)	(501.0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2-1	
			2	5	335.69	1,677.96	연결로	상징광장 가	소로 3-1	
당초 변경	소로	“	3	(5.0)	(94.0)	(470.00)	시설연결로	소로 2-2	산책로 42	
			3	4	170.68	682.59	연결로	진입광장 다	석교	
당초 변경	소로	“	4	(5.0)	(31.5)	(157.50)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42	
			4	4	272.80	1,090.46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2	중심광장나-1	
신설	소로		5	3.5	25.65	93.09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1	소로3-4	
신설	소로		6	3.5	123.04	431.11	연결로	소로 3-2	소로3-4	
신설	소로		7	3.5	51.22	189.05	연결로	주차장 어-1	소로 3-7	
신설	소로		8	3.5	290.44	1,054.62	연결로	소로 3-1	공원경계부 (마을진입부)	
당초 변경		계			(2,774.5) 53.00 1,134.90	(6524.75) 2,738.8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변경	산책로 산책로		1	(3.0)	(10.0)	(30.00)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1	3	211.07	633.35	연결로	중심광장 나-5	중심광장 나-3	
당초 변경			2	(3.0)	(26.5)	(79.50)	시설연결로	산책로 10	산책로 11	
			2	3	17.01	55.33	연결로	소로 3-7	주민참여 체험장A	
당초 변경			3	(2.0)	(15.0)	(30.00)	시설연결로	산책로 6	산책로 10	
			3	3	10.35	30.69	연결로	소로 3-7	주민참여 체험장B	
당초 변경			4	(2.0)	(33.5)	(67.00)	시설연결로	소로 3-3	산책로 6	
			4	3	63.78	217.94	연결로	공원경계	중심광장 나-1	
당초 변경			5	(2.0)	(17.0)	(34.00)	시설연결로	산책로 4	산책로 6	
			5	3	23.74	71.23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1	소로 3-4	
당초 변경			6	(3.0)	(62.0)	(186.00)	시설연결로	산책로 42	산책로 10	
			6	3	3.98	12.1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4	
당초 변경			7	(3.0)	(51.5)	(154.50)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42	
			7	2.5	98.88	247.69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3	진입광장 다	
당초 변경			8	(1.5)	(30.0)	(45.00)	시설연결로	산책로 6	파고라 ⑩-3	
			8	2.5	45.49	114.23	연결로	부진입광장 라-3	연못	
당초 변경			9	(1.5)	(30.0)	(45.00)	시설연결로	산책로 6	파고라 ⑩-2	
			9	2	32.74	75.37	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변경			10	(3.0)	(174.5)	(523.50)	시설연결로	중심광장 나-1	소로 3-3	
			10	2	51.31	104.61	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변경			11	(3.0)	(69.0)	(207.00)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소로 3-3	
			11	2	95.74	191.51	연결로	진입광장 다	중심광장 나-3	
당초 변경			12	(3.0)	(27.5)	(82.50)	시설연결로	진입광장 라-3	공원경계	
			12	2	42.00	83.95	연결로	산책로 11	소로 3-2	
당초 변경			13	(3.0)	(106.0)	(318.00)	시설연결로	소로 3-1	진입광장 라-3	
			13	2	36.15	74.48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14	
당초 변경			14	(2.0)	(14.0)	(28.00)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 13	
			14	2	80.30	160.78	연결로	주차장 어-1	중심광장 나-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5	(2.0)	(38.5)	(77.00)	시설연결로	산책로 16	산책로 13	
변경			15	2	80.29	160.61	연결로	소로 3-7	산책로 14	
당초			16	(3.0)	(124.0)	(372.00)	시설연결로	소로 2-1	진입광장 라-3	
변경			16	2	10.00	19.58	연결로	산책로 14	산책로 15	
당초			17	(1.5)	(15.0)	(22.50)	시설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16	
변경			17	2	10.00	20.00	연결로	산책로 14	산책로 15	
당초			18	(1.5)	(47.5)	(71.25)	시설연결로	산책로 16	산책로 32	
변경			18	2	41.39	82.28	연결로	소로 3-3	휴게소 파-7	
당초			19	(3.0)	(79.5)	(238.50)	시설연결로	중심광장 나-1	소로 2-1	
변경			19	2	17.88	35.65	연결로	소로 3-3	유아숲놀이터	
당초			20	(1.5)	(25.0)	(37.50)	시설연결로	소로 3-2	산책로 25	
변경			20	2	81.66	163.55	연결로	소로 3-3	산책로 8	
당초			21	(1.5)	(14.0)	(21.00)	시설연결로	관리사무소	산책로 22	
변경			21	2	20.33	41.56	연결로	중심광장 나-4	유아숲놀이터	
당초			22	(3.0)	(14.5)	(43.50)	시설연결로	주차장 파-2	산책로 23	
변경			22	2	35.60	80.00	시설연결로	중로3-1	주차장 어-1	
당초			23	(3.0)	(77.0)	(231.00)	시설연결로	중심광장 나-4	관리사무소	
변경			23	2	25.21	62.42	시설연결로	공원경계	주차장 어-2	
폐지			24	(1.5)	(69.0)	(103.50)	시설연결로	산책로 22	산책로 23	
폐지			25	(3.0)	(115.5)	(346.50)	시설연결로	전통놀이마당	소로 2-1	
폐지			26	(2.0)	(92.5)	(185.00)	시설연결로	중심광장 나-2	중심광장 나-3	
폐지			27	(1.5)	(56.5)	(84.75)	시설연결로	산책로 25	산책로 26	
폐지			28	(2.0)	(56.5)	(113.00)	시설연결로	전통놀이마당	중심광장 나-3	
폐지			29	(1.5)	(30.5)	(45.75)	시설연결로	구암서원	산책로 2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폐지			30	(3.0)	(65.0)	(195.00)	시설연결로	부진입광장 라-4	전통놀이마당	
폐지			31	(2.0)	(159.0)	(318.00)	시설연결로	중심광장 나-4	중심광장 나-4	
폐지			32	(2.0)	(66.0)	(132.00)	시설연결로	중앙광장 나-1	산책로 16	
폐지			33	(3.0)	(28.5)	(85.50)	시설연결로	중앙광장 나-2	중앙광장 나-1	
폐지			34	(2.0)	(39.5)	(79.00)	시설연결로	중앙광장 나-1	산책로 35	
폐지			35	(2.0)	(316.0)	(632.00)	시설연결로	부진입광장 라-2	중심광장 나-2	
폐지			36	(2.0)	(26.5)	(53.00)	시설연결로	주차장 파-1	산책로 35	
폐지			37	(1.5)	(29.0)	(43.50)	시설연결로	산책로 35	조류관찰대	
폐지			38	(1.5)	(27.5)	(41.25)	시설연결로	산책로 35	야외무대	
폐지			39	(1.5)	(16.5)	(24.75)	시설연결로	주차장 파-1	산책로 35	
폐지			40	(2.0)	(77.0)	(154.00)	시설연결로	소로 1-2	산책로 35	
폐지			41	(1.5)	(54.0)	(81.00)	시설연결로	부진입광장 라-2	산책로 43	
폐지			42	(3.0)	(195.0)	(585.00)	시설연결로	소로 1-1	중앙광장 나-1	
폐지			43	(1.5)	(56.0)	(84.00)	시설연결로	산책로 44	전망대	
폐지			44	(2.0)	(97.0)	(194.00)	시설연결로	부진입광장 라-2	산책로 42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암사역시공원

■ 토지이용 구역표

구분	지명	용도지역	면적(㎡)	면적(㎡)	비고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1	1,000.00	
	기타시설	기타시설	4	2,000.00	
	기타시설	기타시설	3	1,500.00	
	기타시설	기타시설	8	2,000.00	
공공시설	공공시설	공공시설	1	1,000.00	
	공공시설	공공시설	2	2,000.00	
	공공시설	공공시설	3	1,500.00	
	공공시설	공공시설	8	2,000.00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1	1,000.00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2	2,000.00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3	1,500.00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8	2,000.00	
주거·상업시설	주거·상업시설	주거·상업시설	1	1,000.00	
	주거·상업시설	주거·상업시설	2	2,000.00	
	주거·상업시설	주거·상업시설	3	1,500.00	
	주거·상업시설	주거·상업시설	8	2,000.00	
자연·농림시설	자연·농림시설	자연·농림시설	1	1,000.00	
	자연·농림시설	자연·농림시설	2	2,000.00	
	자연·농림시설	자연·농림시설	3	1,500.00	
	자연·농림시설	자연·농림시설	8	2,000.00	
기타	기타	기타	1	1,000.00	
	기타	기타	2	2,000.00	
	기타	기타	3	1,500.00	
	기타	기타	8	2,000.00	
합계	합계	합계	1	1,000.00	
	합계	합계	2	2,000.00	
	합계	합계	3	1,500.00	
	합계	합계	8	2,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79호
목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목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8.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17호(2000.7.3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4호(2007.2.1.)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목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18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8.02.14.)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76-1, 176-23, 176-38, 176-39
- 면적 : 1,978.2㎡
- 결정취지 : 지하철7호선 목동역 일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II.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목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목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96.8.1.)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500	-	82,500	100.0	
준주거지역	39,200	-	39,200	47.5	
일반상업지역	43,300	-	43,300	52.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구도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입지여건		최대개발규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6	중랑구 묵동 176-38, 39	이면부	간선변 (동1로)	1,000	3,000	·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176-38, 39에 한함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6	· 176-38, 39번지 최대개발규모 변경 1,000㎡ → 3,000㎡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 176-23, 1번지와 필지 176-38, 39번지를 통합하여 획지를 계획함에 따라 간선변(동1로)의 최대개발규모로 변경

나. 필지별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면적(㎡)	계획내용	면적(㎡)	면적(㎡)	계획내용	
획지계획 (가구B6)	계	1,978.2	-	감) 4.5	1,973.7	-	-
	중랑구 묵동 176-23	737.4	획지계획	-	737.4	획지계획	· 2개 획지, 2개 필지를 통합하여 1개 획지로 계획함 · 건축법에 의한 가각전 제 (감 4.5㎡)
	중랑구 묵동 176-1	810.4	획지계획	-	810.4		
	중랑구 묵동 176-38	215.2	필지계획, 선택적 공동개발	-	215.2		
	중랑구 묵동 176-39	215.2		감) 4.5	210.7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B6	· 획지 176-23, 1번지와 필지 176-38, 39번 지를 통합하여 획지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획지계획 변경 · 2개 획지(176-23, 1), 2개 필지(176-38, 39) → 1개 획지(176-23, 1, 38, 39) ·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지정(가각전제)으로 대지의 일부(4.5㎡)를 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제척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기정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비고
용도 계획	지정용도(가)	-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신설 가구B6에 한함
	불허 용도 (1) (간선 도로변)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일반목욕 탕, 안마시술소 · 옥외철타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기존 주유소 증개축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학교시설 보호지구인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7 조에 해당하는 용도 · 교정시설	좌동	변경 없음
		1층 · 단독 및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철물점	좌동	
	권장용도(C)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관람장 제외) · 의료시설 (단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소년학원 · 서점 ·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좌동	변경 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임
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좌동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 : 300%, 250%(주1) 이하 · 허용 : 360%이하 · 상한 : 허용×(1+1.3×가중치× α)이하	· 기본 : 500%이하 · 상한 : 법정용적률 이하	가구 B6에 한함
최고높이	· 70m 이하	좌동	변경없음

※ 주1) 176-38, 39(이면부)의 기준용적률(기정)은 250%임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 용적률 변경 - 기정 : 기준 300%, 250%(주1) 허용 360% - 변경 : 기본용적률 500%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에 따라 용적률 500% 완화

※ 주1) 176-38, 39(이면부)의 기준용적률(기정)은 250%임

다.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6% 이상(118.42㎡ 이상)	· 6.39%(126.1㎡) 계획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지분 : 6.16%(121.60㎡) - 기반시설(도로)기부채납 : 0.23%(4.50㎡)	기본 용적률 5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가구 B6에 한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 15%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14.94% 계획 (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5.06% : 14.94%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8.02%(24세대) : 91.98%(211세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 16.71㎡ 계획 · 민간임대주택 : 16.71㎡, 33.72㎡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 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 주민커뮤니티 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 설치		

주1)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사항(지역주민 개방, 사용기간, 면적, 용도 등)은 중량구청과 협의하여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용적률 완화항목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 목 신설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대지내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동선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계획 : 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없음)	500%	부지면적의 6% 이상 주1) (118.42㎡ 이상)	· 총 공공기여율 : 6.39%(126.1㎡)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지분 : 6.16%(121.60㎡) - 기반시설(도로)기부 채납 : 0.23%(4.50㎡)	가구 B6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2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 건축법에 의한 각각전제된 대지의 일부를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조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V. 관계서류 열람 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32)와 중랑구청 3층 도시개발과(02-2094-2174)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
약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획지 및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기정)도 >



< 획지 및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0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1. 목 적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기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대 상 : 서울시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4. 기 간 : 2018. 4. 16. ~ 4. 30일까지
5. 접종장소 :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6. 문 의 처
가. 각 자치구 동물병원 담당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 ☎ 2133 - 7659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1호
서교동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5호(2017.4.6.)로 승인 고시된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마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같은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5호 (2017.4.6.)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7. 관계 서류 열람방법: 서울시청 8층 임대주택과(02-2133-4944)와 마포구청 4층 주택과(02-3153-9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 고
전 면 공 지	기정	▶ '서교1특별계획구역내'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폭2m)	
	변경	▶ '서교1특별계획구역내'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폭2m) - 전면공지(보도부속형) 2m중 일부를 활용하여 현황(진입)도로 10m 확보	지침도 위 치 표 기

▶ 변경사유서

- 남서측 이면도로를 기존 건축물이 침범하여 지적 상 도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전면 공지를 활용하여 확보하고, 향후 침범 건축물의 국공유지 점유 해소 시 지적상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서교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지구단위계획 내용		비 고
전 면 공 지	기정	▶ '서교1특별계획구역내'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폭2m)	
	변경	▶ '서교1특별계획구역내' 내 남서측 이면도로변 보도형 전면공지를 지정 (폭2m) - 전면공지(보도부속형) 2m중 일부를 활용하여 현황(진입)도로 10m 확보	지침도 위 치 표 기

▶ 변경사유서

- 남서측 이면도로를 기존 건축물이 침범하여 지적 상 도로 경계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전면 공지를 활용하여 확보하고, 향후 침범 건축물의 국공유지 점유 해소 시 지적상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2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03호(2016.12.15.)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34차) 고시된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3410-7595)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 주요 변경내용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 6,7공구 개발기간 변경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2.06.30 (사업준공)	2006.12.31 (사업준공)	2010.01.31 (사업준공)	2011.12.31 (사업준공)	2012.06.30 (사업준공)	2017.12.31	2017.12.31
변 경						2018.12.31	2018.12.31

※ 변경사유

- 6공구내 문화시설(박정희기념관) 관련 계획변경 기간 부족
- 국·공유지 수용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2) 수용할 토지 등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상암동 1170-6 외 13필지

※ 변경사유 : 지적변경사항 최신화
(3) 무상귀속 대상토지 변경

- 상암동 527-36 외 12필지

※ 변경사유 : 무상귀속 협의사항 반영
(4) 공공시설 등 처분계획서 변경

- 무상귀속 조서 및 대체 공공시설 조서 변경

※ 변경사유 :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시설결정사항 반영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I.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명칭 : 서울특별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3)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3.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 가. 개발 목적 : 변경없음
 - (1) 정부의 장·단기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 (2)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
 - (3) 서울 대도시권 서북부지역 부도심 형성
 - (4)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성장에 기여
 - (5) 경제적인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개발기간(변경)
 - 가. 사업 착수일 : 1998년 6월 11일
 - 나. 사업 준공일(변경)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7.12.31	2017.12.31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18.12.31	2018.12.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가. 토지조서(변경분)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기정	상암동	1170-6	대	415	415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0-6	대	414	414	서울교통공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	기정	상암동	1170-7	대	45	45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0-7	대	45	45	서울교통공사					
3	추가	상암동	1170-13	대	1	1	서울교통공사					
4	기정	상암동	1171-5	답	376	376	허필주	송파 잠실 44 A 426-308				
	변경	상암동	1171-5	답	481	481	서울교통공사					
5	기정	상암동	1171-8	답	61	61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1-8	답	61	61	서울교통공사					
6	기정	상암동	1171-9	답	65	65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1-9	답	65	65	서울교통공사					
7	기정	상암동	1185-1	답	18	18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85-1	답	33	33	서울교통공사					
8	기정	성산동	421-25	답	7	7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21-25	답	7	7	서울교통공사					
9	기정	성산동	421-26	답	29	29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21-26	답	29	29	서울교통공사					
10	기정	성산동	477-5	전	10	10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77-5	전	10	10	서울교통공사					
11	기정	성산동	478-5	전	26	26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78-5	전	26	26	서울교통공사					
1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서울특별시	(미등기)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국)	(미등기)				
13	기정	성산동	514-9	전	216	216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514-9	전	216	216	서울특별시 마포구					
14	기정	성산동	527-36	도	38	38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527-36	도	38	38	국 (국토교통부)					

8. 개발계획평면도(Scale = 1/5,000)(변경없음) : 생략

9. 상기 1~8항외 변경사항 없음.

II.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생략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생략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생략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 착 수 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사업 준 공 일(변경)

구 분	사 업 준 공 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기 정	2012.06.30	2006.12.31	2010.01.31	2011.12.31	2012.06.30	2017.12.31	2017.12.31
변 경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사업준공)	2018.12.31	2018.12.31

나. 공종별 소요기간(변경없음) : 생략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생략
8.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생략
9. 토지 등의 매입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0. 이해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생략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 생략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별첨
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기정	상암동	1170-6	대	415	415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0-6	대	414	414	서울교통공사					
2	기정	상암동	1170-7	대	45	45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0-7	대	45	45	서울교통공사					
3	추가	상암동	1170-13	대	1	1	서울교통공사					
4	기정	상암동	1171-5	답	376	376	허필주	송파 잠실 44 A 426-308				
	변경	상암동	1171-5	답	481	481	서울교통공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5	기정	상암동	1171-8	답	61	61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1-8	답	61	61	서울교통공사					
6	기정	상암동	1171-9	답	65	65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71-9	답	65	65	서울교통공사					
7	기정	상암동	1185-1	답	18	18	서울특별시					
	변경	상암동	1185-1	답	33	33	서울교통공사					
8	기정	성산동	421-25	답	7	7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21-25	답	7	7	서울교통공사					
9	기정	성산동	421-26	답	29	29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21-26	답	29	29	서울교통공사					
10	기정	성산동	477-5	전	10	10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77-5	전	10	10	서울교통공사					
11	기정	성산동	478-5	전	26	26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478-5	전	26	26	서울교통공사					
12	기정	성산동	496-4	대	96	96	서울특별시	(미등기)				
	변경	성산동	496-4	대	96	96	(국)	(미등기)				
13	기정	성산동	514-9	전	216	216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514-9	전	216	216	서울특별시 마포구					
14	기정	성산동	527-36	도	38	38	서울특별시					
	변경	성산동	527-36	도	38	38	국 (국토교통부)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생략

16. 사업시행지의 지적도 (Scale = 1/1,200)(변경없음) : 생략

17. 실시계획 평면도 (Scale = 1/5,000)(변경없음) : 생략

18. 상기 1~17항외 변경사항 없음.

III.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총괄조서(변경)

가. 무상귀속토지 총괄조서(변경분)

○ 소관청별 총괄조서(7공구)(변경)

구분			합계	대	전	답	임	잡	도	구	천
합계	필지수	증) 8		증) 1	증) 2	증) 5					
	면적	증) 679		-	증) 36	증) 643					
국(건교부)	필지수	증) 1							증) 1		
	면적	증) 38							증) 38		
서울특별시	필지수	감) 5		감) 2	감) 1	감) 1			감) 1		
	면적	감) 747		감) 460	감) 216	감) 33			감) 38		
마포구	필지수	증) 1			증) 1						
	면적	증) 216			증) 216						
서울교통공사	필지수	증) 11		증) 3	증) 2	증) 6					
	면적	증) 1,172		증) 460	증) 36	증) 676					

※ 측량결과 현실이용 상태가 공공시설임

나. 대체시설토지 총괄조서(변경)

구분		폭원	시설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도로	6~50m	53	15,739	426,7117.3	버스정차대포함
	철도시설	-	1	-	1,455.0	
	광장	-	4	-	8,716.0	
	공원	-	6	-	182,259.3	
	녹지	-	45	-	91,909.2	
	공동구	-	1	2,468	500	도로지하에 매설
	상수도시설	-	-	18,370	-	도로지하에 매설
	하수도시설	-	-	31,428	오수펌프장 :3,215	
변경	도로	2~50m	56	17,504.7	459,389.7	버스정차대포함
	철도시설	-	2	-	1,662.7	
	광장	-	2	-	2,863.5	
	공원	-	10	-	185,257.1	
	녹지	-	41	-	75,503.1	
	공동구	-	1	2,468	512.6	
	상수도시설	-	-	18,370	-	도로지하에 매설
	하수도시설	-	-	31,428	오수펌프장 :3,123	도로지하에 매설
	하천	-	1	-	1,257.0	
	문화시설	-	1	-	11,099.1	박정희 기념도서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할 자 : (기정)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변경)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시행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
 - (기정)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 (변경)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서울교통공사장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변경)
 -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분)
 - (1) 7공구(변경분)

■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상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공 시설외	
									도로	구거	하천		
1	기정	성산동	527-36	도	38	38	38	서울특별시	38	-	-	-	
	변경	성산동	527-36	도	38	38	38	국 (국토교통부)	38	-	-	-	
소 계					38	38	38		38	-	-	-	

■ 서울시 마포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상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공 시설외	
									도로	구거	하천		
1	기정	성산동	514-9	전	216	216	216	서울특별시	216	-	-	-	
	변경	성산동	514-9	전	216	216	216	서울특별시 마포구	216	-	-	-	
소 계					216	216	216		216	-	-	-	

■ 서울교통공사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상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공 시설외	
									도로	구거	철도		
1	기정	상암동	1170-6	대	415	415	415	서울특별시	415	-	-	-	
	변경	상암동	1170-6	대	414	414	414	서울교통 공사	-	-	414	-	
2	기정	상암동	1170-7	대	45	45	45	서울특별시	45	-	-	-	
	변경	상암동	1170-7	대	45	45	45	서울교통 공사	-	-	45	-	
3	추가	상암동	1170-13	답	1	1	1	서울교통 공사			1	-	신규
4	추가	상암동	1171-5	답	481	481	481	서울교통 공사	-	-	481	-	신규
5	추가	상암동	1171-8	답	61	61	61	서울교통 공사	-	-	61	-	신규
6	추가	상암동	1171-9	답	65	65	65	서울교통 공사	-	-	65	-	신규
7	기정	상암동	1185-1	답	33	33	33	서울특별시	33	-	-	-	
	변경	상암동	1185-1	답	33	33	33	서울교통 공사	-	-	33	-	
8	추가	성산동	421-25	답	7	7	7	서울교통 공사	-	-	7	-	신규
9	추가	성산동	421-26	답	29	29	29	서울교통 공사	-	-	29	-	신규
10	추가	성산동	477-5	전	10	10	10	서울교통 공사	-	-	10	-	신규
11	추가	성산동	478-5	전	26	26	26	서울교통 공사	-	-	26	-	신규
소계					1,172	1,172	1,172				1,172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계획 총괄

(기정)

구 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총계			53(3)	17,232	462,717.3	12	4,756	168,778.0	6(1)	862	15,921.7	10	2,381	50,025.0	23(2)	7,360	210,108.0	2	678	17,884.6
소계			1	1,838	100,314.5	1	1,838	100,284.0	-	-	30.5	-	-	-	-	-	-	-	-	-
광로	2류	50	1	1,838	100,314.5	1	1,838	100,284.0	-	-	30.5	-	-	-	-	-	-	-	-	-
소 계			8(3)	7,424	222,167.8	3	1,810	50,728.0	(1)	-	2,244.0	-	-	-	4(2)	3,961	152,230.0	1	458	16,965.8
대 로	1류	35	1	1,195	51,320.0			-			-			-	1	1,195	51,320.0			-
	2류	30	1	1,032	34,142.0	1	1,032	34,142.0	-	-	-	-	-	-	-	-	-	-	-	-
	3류	25	6(3)	5,197	136,705.8	2	778	16,586.0	(1)	-	2,244.0	-	-	-	3(2)	3,961	100,910.0	1	458	16,965.8
소계			19	5,305	111,694.0	5	954	16,740.0	1	489	10,388.0	4	1,875	45,756.0	9	1,987	38,810.0	-	-	-
중 로	1류	20	10	3,474	82,305.0	1	257	5,400.0	1	489	10,388.0	4	1,875	45,756.0	4	853	20,761.0	-	-	-
	2류	15	9	1,831	29,389.0	4	697	11,340.0	-	-	-	-	-	-	5	1,134	18,049.0	-	-	-
	3류	12	-	-	-															
소계			11	1,091	7,839.2	3	154	1,026.0	2	114	714.4	3	383	3,580.0	2	220	1,600.0	1	220	918.8
소 로	1류	10	-	-	-															
	2류	8	4	498	4,529.0	-	-	-	-	-	-	3	383	3,580.0	1	115	949.0	-	-	-
	3류	8미만	7	593	3,310.2	3	154	1,026.0	2	114	714.4	-	-	-	1	105	651.0	1	220	918.8
소계			14	1,574	20,701.8	-	-	-	3	259	2,544.8	3	123	689.0	8	1,192	17,468.0	-	-	-
보 행 자 도 로	중로1 류	20	2	352	7,492.0	-	-	-	-	-	-	-	-	-	2	352	7,492.0	-	-	-
	중로2 류	15	1	297	4,601.0	-	-	-	-	-	-	-	-	-	1	297	4,601.0	-	-	-
	소로1 류	10	5	721	7,406.3	-	-	-	1	242	2,426.3	-	-	-	4	479	4,980.0	-	-	-
	소로2 류	8	1	16	113.3	-	-	-	1	16	113.3	-	-	-	-	-	-	-	-	-
	소로3 류	8미만	5	188	1,089.2	-	-	-	1	1	5.2	3	123	689.0	1	64	395.0	-	-	-
가감속차선 버스 정차대 가각전제																				

※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변경)

구 분		폭원 (m)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총 계		-	56 (9)	17,504.7	459,389.7	10	3,680.0	148,339.3	6(2)	1,030.2	15,921.7	11 (3)	2,387.0	44,855.3	25 (2)	8,578.5	204,181.3	1	678.0	17,472.1	1	99.0	908.0	1(2)	1,052.0	27,712.0
보 광	소계	-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1류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50	1(1)	1,838.0	97,268.6	1	1,838.0	96,827.2	(1)	-	30.5	(1)	-	410.9	-	-	-	-	-	-	-	-	-	-	-	
	3류	-	-	-	-	-	-	-	-	-	-	-	-	-	-	-	-	-	-	-	-	-	-	-	-	
보 대	소계	-	8(8)	7,592.2	228,558.5	2	758.0	33,977.6	(2)	168.2	2,244.0	(2)	-	202.7	4(2)	5,156.0	147,842.6	1	458.0	16,579.6	-	-	-	1(2)	1,052.0	27,712.0
	1류	30	1(1)	1,195.0	49,616.5	-	-	-	-	-	-	(1)	-	80.0	1	1,195.0	49,536.5	-	-	-	-	-	-	-	-	
	2류	25	1(1)	1,032.0	44,229.1	1	744.0	32,773.9	-	-	-	-	-	-	-	-	-	-	-	-	-	-	(1)	288.0	11,455.2	
	3류	25 ~35	6(6)	5,365.2	134,712.9	1	14.0	1,203.7	(2)	168.2	2,244.0	(1)	-	122.7	3(2)	3,961.0	98,306.1	1	458.0	16,579.6	-	-	-	1(1)	764.0	16,256.8
보 중	소계	-	19	5,305.0	104,747.0	5	954.0	16,508.8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9	1,987.0	37,583.8	-	-	-	-	-	-	-	-	
	1류	15	10	3,474.0	75,706.7	1	257.0	5,406.1	1	489.0	10,388.0	4	1,875.0	40,266.4	4	853.0	19,646.2	-	-	-	-	-	-	-	-	
	2류	12	9	1,831.0	29,040.3	4	697.0	11,102.7	-	-	-	-	-	-	5	1,134.0	17,937.6	-	-	-	-	-	-	-	-	
	3류	-	-	-	-	-	-	-	-	-	-	-	-	-	-	-	-	-	-	-	-	-	-	-	-	
보 소	소계	-	9	847.0	6,806.8	2	130.0	1,025.7	2	114.0	714.4	2	284.0	2,365.9	2	220.0	1,792.8	-	-	-	1	99.0	908.0	-	-	-
	1류	-	-	-	-	-	-	-	-	-	-	-	-	-	-	-	-	-	-	-	-	-	-	-	-	
	2류	8	4	498.0	4,455.6	-	-	-	-	-	-	2	284.0	2,365.9	1	115.0	1,181.7	-	-	-	1	99.0	908.0	-	-	-
	3류	8 미만	5	349.0	2,351.2	2	130.0	1,025.7	2	114.0	714.4	-	-	-	1	105.0	611.1	-	-	-	-	-	-	-	-	
보 노 보 행 자 전 용 도 로	소계	-	19	1,922.5	22,008.8	-	-	-	3	259.0	2,544.8	3	228.0	1,609.4	10	1,215.5	16,962.1	1	220.0	892.5	-	-	-	-	-	-
	중 로	1	15	2	352.0	7,242.7	-	-	-	-	-	-	-	-	2	352.0	7,242.7	-	-	-	-	-	-	-	-	-
		2	10	1	297.0	4,456.0	-	-	-	-	-	-	-	-	1	297.0	4,456.0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소 로	1	8	5	721.0	7,243.4	-	-	-	1	242.0	2,426.3	-	-	-	4	479.0	4,817.1	-	-	-	-	-	-	-	-
		2	8 미만	1	16.0	113.3	-	-	-	1	16.0	113.3	-	-	-	-	-	-	-	-	-	-	-	-	-	-
		3	-	10	536.5	2,953.4	-	-	-	1	1.0	5.2	5	228.0	1,609.4	3	87.5	446.3	1	220.0	892.5	-	-	-	-	-

주) ()안의 숫자는 1개노선의 공구별 중복 산정값임

(나) 도로조서
(기정)

구분				사용 영역	기능	기점	종점	연장(m)	면적 (㎡)	1종구		2종구		3종구		4종구		5종구		비고
종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광로	2	93	50	일반 회차	주간선 도로	성산동 537-4	고양시덕은동 269	2,498 (1,838)	100,284.0	(1,838)	100,284.0									
대로	1	1	35	일반 회차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1,195	51,320.0							1,195	51,320.0			
대로	2	20	30	일반 회차	주간선 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34,142.0	(1,032)	34,142.0									
대로	3	30	25 ~ 35	일반 회차	보조간선도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138)	6,971.1	(138)	4,978	1,993.1								사업 지구 내확폭
대로	3	32	30	일반 회차	주간선 도로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24,700.8							(479)	7,735	(458)	16,965.8	
대로	3	1	25	일반 회차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167-2 (중로 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7,454.0	640	11,608					1,330	35,846			
대로	3	2	25	일반 회차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56 (광로 2-93)	상암동 1-3 (대로 3-1)	944	24,498.9			250.9				944	24,248.0			
대로	3	3	25	일반 회차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405 (광로 2-93)	상암동 229-13 (대로 3-1)	940	24,948.0							940	24,948.0			
대로	3	4	25	일반 회차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302-3 (대로 1-1)	상암동 292-1 (대로 3-1)	268	8,133.0							268	8,133.0			
영로	1	401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186 (대로 3-1)	상암동 27-49 (대로 3-30)	257	5,400.0	257	5,400.0									
영로	1	1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73 (대로 3-2)	상암동 산6 (대로 3-30)	489	10,388.0			489	10,388.0							
영로	1	2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98 (대로 3-2)	상암동 876 (대로 3-3)	164	4,610.0							164	4,610.0			
영로	1	3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72-4 (대로 1-1)	상암동 251-10 (대로 3-1)	298	7,508.0							298	7,508.0			
영로	1	4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85-2 (대로 3-3)	상암동 445-1 (중로 1-6)	1,089	25,458.0					1,089	25,458.0					
영로	1	5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360-4 (중로 1-4)	상암동 301 (대로 1-1)	89	3,273.0					89	3,273.0					
영로	1	6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542-1 (광로 2-93)	상암동 446 (대로 3-32)	607	14,474.0					607	14,474.0					
영로	1	7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383-1 (중로 1-4)	상암동 374-3 (대로 1-1)	90	2,551.0					90	2,551.0					
영로	1	8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296답	상암동 292-3 (대로 3-4)	297	6,213.0							297	6,213.0			
영로	1	9	20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 1-3)	297	6,213.0							297	6,213.0			
영로	1	10	20	복수 차도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244-4 (중로 1-3)	상암동 220 (대로 3-3)	278	5,863.0							278	5,863.0			자전거도로 포함
영로	1	11	20	복수 차도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218 (대로 3-3)	상암동 202-6 (중로 2-6)	74	1,629.0							74	1,629.0			자전거도로 포함
영로	2	404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250	4,023.0	250	4,023.0									
영로	2	405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79	1,324.0	79	1,324.0									
영로	2	406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89	1,505.0	89	1,505.0									
영로	2	407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153 (중로 1-126)	성산동 495 (중로 1-401)	279	4,488.0	279	4,488.0									
영로	2	1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202	3,194.0							202	3,194.0			
영로	2	2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164	2,609.0							164	2,609.0			
영로	2	3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369 (대로 1-1)	상암동 251-13 (대로 3-1)	265	4,236.0							265	4,236.0			
영로	2	4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62 (대로 3-1)	253	4,062.0							253	4,062.0			
영로	2	5	15	일반 회차	집사 도로	상암동 304 (대로 1-1)	상암동 308-3 (대로 3-1)	250	3,948.0							250	3,948.0			
영로	2	6	15	복수 차도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202-4 (대로 1-1)	상암동 9-10 (대로 3-1)	297	4,601.0							297	4,601.0			자전거도로 포함

구 모				사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연장(m)	면적 (㎡)	
소로	1	1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12-3 (중로1-1)	상암동 산12-3 (대로3-2)	242	2,426.3			242	2,426.3							자전거도로 포함
소로	1	2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산11-4 (중로2-1)	상암동 산12-3 (대로3-2)	80	825.0							80	825.0			자전거도로 포함
소로	1	3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38-1 (대로3-3)	상암동 136-9 (중로2-1)	75	777.0							75	777.0			자전거도로 포함
소로	1	4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93 (대로1-1)	상암동 187 (중로1-11)	177	1,846.0							177	1,846.0			자전거도로 포함
소로	1	5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87 (중로1-11)	상암동 234-7 (대로3-1)	147	1,532.0							147	1,532.0			자전거도로 포함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21 (대로3-2)	상암동 1385-8	115	949.0							115	949.0			
소로	2	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94 (중로1-4)	상암동 산21	99	908.0					99	908.0					
소로	2	3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34 (중로1-4)	상암동 357-1 (중로1-4)	134	1,274.0					134	1,274.0					
소로	2	4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48 (중로1-6)	150	1,398.0					150	1,398.0					
소로	2	5	8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6-1 (중로1-1)	상암동 34-37	16	113.3			16	113.3							
소로	3	1	6~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533 (중로1-401상암동 1280-1)	상암동 1258 (중로2-404상암동 1285-1)	369 (110)	803.0	(110)	803									
소로	3	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4-9 (대3-30)	상암동 24-8	20	124.0	20	124									
소로	3	3	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8-170	상암동 28-171	24	99.0	24	99.0									
소로	3	4	6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1	5.2			1	5.2							
소로	3	5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7-15 (대3-30)	상암동 37-27	42	259.6			42	259.6							
소로	3	6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5-7 (대3-30)	상암동 115-5	72	454.8			72	454.8							
소로	3	7	4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357-1 (중로1-4)	상암동 357 (소로2-3)	42	187.0					42	187.0					
소로	3	8	4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335-2 (소로2-3)	상암동 335-2	21						21	93.0					
소로	3	9	6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431-1 (중로1-6)	상암동 451-2	60	409.0					60	409.0					
소로	3	10	6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상암동 136-6 (중로2-2)	상암동 136-1 (대로1-1)	64	395.0							64	395.0			
소로	3	11	4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672-1	상암동 695	220	918.8									220	918.8	
소로	3	1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34-7	상암동 8-17	105	651.0							105	651.0			

주) ()는 사업지구내 구간임

(변경)

등급	규모			사용 형태	기 능	기 점	총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류별	번 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광로	2	93	5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산동 537-4	고양시덕은동 269	2,498 (1,838)	97,268.6	(1,838)	96,827.2	-	30.5	-	410.9	-	-	-	-	-	-	-	-	
대로	1	1	3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29-2 (대로 3-30)	수색동 (대로 3-32)	1,195	49,616.5	-	-	-	-	-	80.0	1,195	49,536.5	-	-	-	-	-	-	
대로	2	20	3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성산동 53-26 (광로 2-93)	불광동 (대로 2-12)	6,723 (1,032)	44,229.1	(744)	32,773.9	-	-	-	-	-	-	-	-	-	-	(288)	11,455.2	
대로	3	30	25 ~ 3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성산동 (대로 3-187)	상암동 129-2 (대로 1-1)	3,250 (306.2)	7,774.6	(14)	1,203.7	(168.2)	1,993.1	-	-	-	-	-	-	-	-	(124)	4,577.8	
대로	3	32	3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2,175 (937)	24,590.6	-	-	-	-	-	(479)	8,011.0	(458)	16,579.6	-	-	-	-	-	
대로	3	1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1167-2 (중로1-126)	수색동 (대로 3-32)	1,970	46,376.4	-	-	-	-	-	-	1,330	34,697.4	-	-	-	-	640	11,679.0	
대로	3	2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56 (광로2-93)	상암동 1-3 (대로3-1)	944	23,843.4	-	-	-	250.9	-	-	944	23,592.5	-	-	-	-	-	-	
대로	3	3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405 (광로2-93)	상암동 229-13 (대로3-1)	940	24,261.9	-	-	-	-	-	122.7	940	24,139.2	-	-	-	-	-	-	
대로	3	4	25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상암동 302-3 (대로1-1)	상암동 292-1 (대로3-1)	268	7,866.0	-	-	-	-	-	-	268	7,866.0	-	-	-	-	-	-	
중로	1	401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6 (대로3-1)	상암동 27-49 (대로3-30)	257	5,406.1	257	5,406.1	-	-	-	-	-	-	-	-	-	-	-	-	
중로	1	1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73 (대로3-2)	상암동 산6 (대로3-30)	489	10,388.0	-	-	489	10,388.0	-	-	-	-	-	-	-	-	-	-	
중로	1	2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98 (대로3-2)	상암동 876 (대로3-3)	164	4,494.2	-	-	-	-	-	-	164	4,494.2	-	-	-	-	-	-	
중로	1	3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72-4 (대로1-1)	상암동 251-10 (대로3-1)	298	7,264.1	-	-	-	-	-	-	298	7,264.1	-	-	-	-	-	-	
중로	1	4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85-2 (대로3-3)	상암동 445-1 (중로1-6)	1,089	22,597.9	-	-	-	-	1,089	22,597.9	-	-	-	-	-	-	-	-	
중로	1	5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0-4 (중로1-4)	상암동 301 (대로1-1)	89	2,859.3	-	-	-	-	89	2,859.3	-	-	-	-	-	-	-	-	
중로	1	6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542-1 (광로2-93)	상암동 446 (대로3-32)	607	12,564.6	-	-	-	-	607	12,564.6	-	-	-	-	-	-	-	-	
중로	1	7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83-1 (중로1-4)	상암동 374-3 (대로1-1)	90	2,244.6	-	-	-	-	90	2,244.6	-	-	-	-	-	-	-	-	
중로	1	8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296답	상암동 292-3 (대로3-4)	94	2,354.5	-	-	-	-	-	-	94	2,354.5	-	-	-	-	-	-	
중로	1	9	20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291 (대로 3-4)	상암동 258-1 (중로1-3)	297	5,533.4	-	-	-	-	-	-	297	5,533.4	-	-	-	-	-	-	
중로	1	10	2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44-4 (중로1-3)	상암동 220 (대로3-3)	278	5,673.8	-	-	-	-	-	-	278	5,673.8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중로	1	11	2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18 (대로3-3)	상암동 202-6 (중로2-6)	74	1,568.9	-	-	-	-	-	-	74	1,568.9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중로	2	404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251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1-401)	250	4,127.5	250	4,127.5	-	-	-	-	-	-	-	-	-	-	-	-	
중로	2	405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8 (중로 1-126)	상암동 1271 (중로 2-404)	79	1,243.8	79	1,243.8	-	-	-	-	-	-	-	-	-	-	-	-	

규모				사용 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연장 (m)	면적 (㎡)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중로	2	406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83 (중로 1-401)	상암동 1178 (중로 2-407)	89	1428.2	89	1428.2	-	-	-	-	-	-	-	-	-	-	-	-	
중로	2	407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153 (중로 1-126)	상암동 495 (중로 1-401)	279	4,303.2	279	4,303.2	-	-	-	-	-	-	-	-	-	-	-	-	
중로	2	1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산14-8 (중로 1-2)	상암동 136-4 (중로 2-2)	202	3,084.3	-	-	-	-	-	-	202	3,084.3	-	-	-	-	-	-	
중로	2	2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170-3 (대로 3-3)	상암동 산11-1 (대로 3-2)	164	2,523.6	-	-	-	-	-	-	164	2,523.6	-	-	-	-	-	-	
중로	2	3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9 (대로 1-1)	상암동 251-13 (대로 3-1)	265	4,337.5	-	-	-	-	-	-	265	4,337.5	-	-	-	-	-	-	
중로	2	4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68-2 (대로 1-1)	상암동 251-45 (대로 3-1)	253	4,170.3	-	-	-	-	-	-	253	4,170.3	-	-	-	-	-	-	
중로	2	5	15	일반 도로	집산 도로	상암동 304 (대로 1-1)	상암동 308-3 (대로 3-1)	250	3,821.9	-	-	-	-	-	-	250	3,821.9	-	-	-	-	-	-	
중로	2	6	15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202-4 (대로 1-1)	상암동 9-10 (대로 3-1)	297	4,456	-	-	-	-	-	-	297	4,456.0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소로	1	1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12-3 (중로 1-1)	상암동 산12-3 (대로 3-2)	242	2,426.3	-	-	242	2,426.3	-	-	-	-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소로	1	2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산11-4 (중로 2-1)	상암동 산12-3 (대로 3-2)	80	797.3	-	-	-	-	-	-	80	797.3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소로	1	3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38-1 (대로 3-3)	상암동 136-9 (중로 2-1)	75	749.0	-	-	-	-	-	-	75	749.0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소로	1	4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93 (대로 1-1)	상암동 187 (중로 1-11)	177	1,786.2	-	-	-	-	-	-	177	1,786.2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소로	1	5	10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187 (중로 1-11)	상암동 234-7 (대로 3-1)	147	1,484.6	-	-	-	-	-	-	147	1,484.6	-	-	-	-	-	-	자전거 도로 포함
소로	2	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1-21 (대로 3-2)	상암동 1385-8	115	1,181.7	-	-	-	-	-	-	115	1,181.7	-	-	-	-	-	-	
소로	2	2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94 (중로 1-4)	상암동 산21	99	908.0	-	-	-	-	-	-	-	-	-	-	99	908.0	-	-	
소로	2	3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334 (중로 1-4)	상암동 357-1 (중로 1-4)	134	1,127.0	-	-	-	-	134	1,127.0	-	-	-	-	-	-	-	-	
소로	2	4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431-1 (중로 1-6)	상암동 448 (중로 1-6)	150	1,238.9	-	-	-	-	150	1,238.9	-	-	-	-	-	-	-	-	
소로	2	5	8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6-1 (중로 1-1)	상암동 34-37	16	113.3	-	-	16	113.3	-	-	-	-	-	-	-	-	-	-	
소로	3	1	6 ~ 10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1533 (중로 1-401상암동 1280-1)	상암동 1258 (중로 2-404상암 동 1285-1)	369 (110)	903.3	(110)	903.3	-	-	-	-	-	-	-	-	-	-	-	-	
소로	3	2	6	일반 도로	국지 도로	상암동 24-9 (대 3-30)	상암동 24-8	20	122.4	20	122.4	-	-	-	-	-	-	-	-	-	-	-	-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로	특수 도로	상암동 34-58	상암동 34-7	1	5.2	-	-	1	5.2	-	-	-	-	-	-	-	-	-	-	

(2) 광장계획(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 고
계	기정		8,716	2,920	-	-	5,796	-			
	변경		2,863.5	468.6	-	-	-	-	-	2,394.9	
1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457	2,457	-	-	-	-	-	-	
	변경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	-	-	-	-	-	2,394.9	
2	기정	상암동 24-12대 일원	463	463	-	-	-	-	-	-	
	변경	상암동 24-12대 일원	468.6	468.6	-	-	-	-	-	-	
3	기정	상암동 9-30대 일원	3,140	-	-	-	3,140	-			폐지
	변경	-	-	-	-	-	-	-	-	-	
4	기정	상암동 9-15대 일원	2,656	-	-	-	2,656	-			폐지
	변경	-	-	-	-	-	-	-	-	-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

○ 공원(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계	기정	-	182,259.3	2,902	1,511.3	163,444	14,402	-	-	-	
	변경	-	185,257.1	2,896.8	1,511.3	3,026.5	28,572.3	-	149,250.2	-	
근린공원	소계	기정	-	-	-	160,422	14,402	-	-	-	
		변경	-	-	-	-	14,286.5	-	149,250.2	-	
	1	기정	상암동 산21임 일원	160,422	-	-	160,422	-	-	-	
		변경	상암동 산21임 일원	149,250.2	-	-	-	-	149,250.2	-	
	2	기정	상암동 313-3답 일원	14,402	-	-	14,402	-	-	-	
		변경	상암동 313-3답 일원	14,286.5	-	-	14,286.5	-	-	-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어린이공원	소계	기정	-	7,435.3	2,902	1,511.3	3,022	-	-	-	-	
		변경	-	7,434.6	2,896.8	1,511.3	3,026.5	-	-	-	-	
	1	기정	상암동 1282 대 일원	2,902	2,902	-	-	-	-	-	-	
		변경		2,896.8	2,896.8	-	-	-	-	-	-	
	2	변경 없음	상암동 114-1전 일원	1,511.3	-	1,511.3	-	-	-	-	-	
	3	기정	상암동 154-5대 일원	1,519	-	-	1,519	-	-			
		변경		1,522.2	-	-	1,522.2	-	-	-	-	-
	4	기정	상암동 462-2전 일원	1,503	-	-	1,503	-	-			
		변경		1,504.3	-	-	1,504.3	-	-	-	-	-
문화공원	소계	추가	-	14,285.8	-	-	-	14,285.8	-	-	-	신규
	1	추가	상암동 260-2답 일원	4,630.7	-	-	-	4,630.7	-	-	-	신규
	2	추가	상암동 203-4답 일원	3,828.6	-	-	-	3,828.6	-	-	-	신규
	3	추가	상암동 260-2답 일원	3,154.7	-	-	-	3,154.7	-	-	-	신규
	4	추가	상암동 260-2답 일원	2,671.8	-	-	-	2,671.8	-	-	-	신규

○ 녹지(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총계	기정		91,908.2	20,102	18,697.2	16,067	35,868	1,174			
	변경		75,503.1	15,250.5	18,697.2	12,209.0	20,210.4	4,252.5	-	4,883.5	
경관 녹지	소계	기정	45,740	15,180	11,355	1,652	16,379	1,174			
		변경	29,856.2	15,250.5	11,355.0	461.3	1,669.9	1,119.5	-	-	
	1	기정	상암동 산4-185 임 일원	15,180	15,180	-	-	-	-	-	
		변경	상암동 산4-185 임 일원	15,250.5	15,250.5	-	-	-	-	-	
	2	기정	상암동 산4-1임 일원	5,768.8	-	5,768.8	-	-	-	-	
	3	기정	상암동 34-15대 일원	1,620.6	-	1,620.6	-	-	-	-	
	4	기정	상암동 산4-142임 일원	3,540	-	3,540	-	-	-	-	
	5	기정	상암동 34-27대 일원	425.6	-	425.6	-	-	-	-	
	6	기정	상암동 405-2전 일원	6,837	-	-	-	6,837	-	-	
		변경	상암동 136-5전 일원	335.4	-	-	-	335.4	-	-	
	7	기정	상암동 136-5전 일원	334	-	-	-	334	-	-	
		변경	상암동 산14-3임 일원	783.9	-	-	-	783.9	-	-	
	8	기정	상암동 산14-3임 일원	785	-	-	-	785	-	-	
		변경	상암동 300-2답 일원	461.3	-	-	461.3	-	-	-	
	9	기정	상암동 203-4답 일원	3,775	-	-	-	3,775	-	-	
		변경	상암동 444전 일원	1,119.5	-	-	-	-	1,119.5	-	
	10	기정	상암동 260-2답 일원	4,648	-	-	-	4,648	-	-	
		변경	상암동 869-1답 일원	550.6	-	-	-	550.6	-	-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완 충 녹 지	소계	기정		46,168.2	4,922	7,342.2	14,415	19,489	-			
		변경		45,646.9	-	7,342.2	1,1747.7	18,540.5	3,133.0	-	4,883.5	
	1	기정	성암동 486-4답 일원	4,922	4,922	-	-	-	-			
		변경	성암동 486-4답 일원	4,883.5	-	-	-	-	-	-	4,883.5	
	2	기정	상암동 37-23대 일원	808.6	-	808.6	-	-	-			
	3	기정	상암동 128-1답 일원	736	-	736	-	-	-			
	4	기정	상암동 126-7전 일원	353.6	-	353.6	-	-	-			
	5	기정	상암동 126-2전 일원	941.2	-	941.2	-	-	-			
	6	기정	상암동 55-7전 일원	829.4	-	829.4	-	-	-			
	7	기정	상암동 1538-6잡 일원	3,673.4	-	3,673.4	-	-	-			
	8	기정	상암동 92전 일원	1,021	-	-	-	1,021	-			
		변경	상암동 92전 일원	987.4	-	-	-	987.4	-	-	-	
	9	기정	상암동 87-8대 일원	434	-	-	-	434	-			
		변경	상암동 87-8대 일원	428.2	-	-	-	428.2	-	-	-	
	10	기정	상암동 97-1대 일원	483	-	-	-	483	-			
		변경	상암동 97-1대 일원	481.5	-	-	-	481.5	-	-	-	
	11	기정	상암동 214-2전 일원	1,805	-	-	1,805	-	-			
		변경	상암동 214-2전 일원	1,794.8	-	-	1,794.8	-	-	-	-	
	12	기정	상암동 371-1답 일원	1,137	-	-	1,137	-	-			
		변경	상암동 371-1답 일원	1,180.7	-	-	1,180.7	-	-	-	-	
	13	기정	상암동 360-1답 일원	1,141	-	-	1,141	-	-			
		변경	상암동 360-1답 일원	1,189.3	-	-	1,189.3	-	-	-	-	
	14	기정	상암동 320전 일원	5,794	-	-	5,794	-	-			
		변경	상암동 320전 일원	5,894.6	-	-	2,761.6	-	3,133.0	-	-	
	15	기정	상암동 478-14잡 일원	3,216	-	-	3,216	-	-			
		변경	상암동 478-14잡 일원	3,181.6	-	-	3,181.6	-	-	-	-	
	16	기정	상암동 134-4전 일원	541	-	-	-	541	-			
		변경	상암동 134-4전 일원	540.4	-	-	-	540.4	-	-	-	
	17	기정	상암동 200-4전 일원	392	-	-	-	392	-			
		변경	상암동 200-4전 일원	389.4	-	-	-	389.4	-	-	-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완 충 녹 지	18	기정	상암동 201전 일원	1,273	-	-	-	1,273	-		
		변경	상암동 201전 일원	1,273.1	-	-	-	1,273.1	-	-	
	19	기정	상암동 251-29답 일원	1,273	-	-	-	1,273	-		
		변경	상암동 251-29답 일원	857.6	-	-	-	857.6	-	-	
	20	기정	상암동 251-4답 일원	823	-	-	-	823	-		
		변경	상암동 251-4답 일원	822.7	-	-	-	822.7	-	-	
	21	기정	상암동 274-2전 일원	850	-	-	-	850	-		
		변경	상암동 274-2전 일원	850.6	-	-	-	850.6	-	-	
	22	기정	상암동 293답 일원	878	-	-	-	878	-		
		변경	상암동 293답 일원	877.8	-	-	-	877.8	-	-	
	23	기정	상암동 223답 일원	3,547	-	-	-	3,547	-		
		변경	상암동 223답 일원	3,506.7	-	-	-	3,506.7	-	-	
	24	기정	상암동 172-6답 일원	1,342	-	-	-	1,342	-		
		변경	상암동 172-6답 일원	1,341.8	-	-	-	1,341.8	-	-	
	25	기정	상암동 173답 일원	1,474	-	-	-	1,474	-		
		변경	상암동 173답 일원	1,471.7	-	-	-	1,471.7	-	-	
	26	기정	상암동 369답 일원	1,152	-	-	-	1,152	-		
		변경	상암동 369답 일원	1,150.7	-	-	-	1,150.7	-	-	
	27	기정	상암동 286답 일원	1,456	-	-	-	1,456	-		
		변경	상암동 286답 일원	1,458.9	-	-	-	1,458.9	-	-	
	28	기정	상암동 302-7답 일원	1,457	-	-	-	1,457	-		
		변경	상암동 302-7답 일원	1,456.5	-	-	-	1,456.5	-	-	
	29	기정	상암동 869-1답 일원	865	-	-	-	865	-		폐지
		변경	-	-	-	-	-	-	-	-	
	30	기정	상암동 794대 일원	643	-	-	-	643	-		
		변경	상암동 794대 일원	645.5	-	-	-	645.5	-	-	
	31	기정	상암동 140-2전 일원	371	-	-	371	-	-		
		변경	상암동 140-2전 일원	629.5	-	-	629.5	-	-	-	
	32	기정	상암동 산14-29임 일원	951	-	-	951	-	-		
		변경	상암동 산14-29임 일원	1,010.2	-	-	1,010.2	-	-	-	

(4) 철도시설(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계	기정		1,455	1,455	-	-	-	-			
	변경		1,662.7	236.6	-	-	-	-	-	1,426.1	
1	기정	상암동 1171-5답 일원	1,455	1,455	-	-	-	-			
	변경	상암동 1171-5답 일원	1,426.1	-	-	-	-	-	-	1,426.1	
2	추가	상암동 1270답 일원	236.6	236.6	-	-	-	-	-	-	신규

(5) 하수도시설(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계	기정		3,215	-	-	-	92	3,123			
	변경		3,212.9	-	-	-	89.9	-	3,123.0	-	
1	기정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3,123	-	-	-	-	3,123			
	변경	고양시 덕은동 569-2천 일원	3,123.0	-	-	-	-	-	3,123.0	-	
2	기정	상암동 205-3전 일원	92	-	-	-	92	-			
	변경	상암동 205-3전 일원	89.9	-	-	-	89.9	-	-	-	

(6) 상하수도시설(변경없음) : 생략

(7) 공동구(변경)

구 분		위 치	규격			연 장(m)		비 고
1	기정	대로 1-1, 대로3-30, 대로3-3	A-1, A-2, A-3 TYPE B TYPE C TYPE			2,468		공동구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비 고	
1	기정	상암동 24-68임 일원	500	500	-	-	관리사무소	
	변경	상암동 24-68임 일원	512.6	512.6	-	-		

(8) 하천(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계	신규		1,257.0	-	-	-	-	1,257.0	-	-	
1	신규	상암동 697전 일원	1,257.0	-	-	-	-	1,257.0	-	-	

(9) 문화시설(변경)

구 분		위 치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비고
계	신규		11,099.1	-	-	-	-	-	11,099.1	-	
1	신규	상암동 산21임 일원	11,099.1	-	-	-	-	-	11,099.1	-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대체구거의 단면결정에 따른 수리계산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귀속도(변경없음) : 생략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3410-7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4호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2006.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49호(2006.10.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17호(2007.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3호(2007.7.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42호(2007.9.6) 및 제2009-15호(2009.4.3), 제2010-4호(201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0호(201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99호(20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2호(2012.5.10),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73호(2012.7.13) 및 제2012-97호(2012.9.27), 제2012-104호(2012.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5호(2012.11.29),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130호(2012.1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3호(2013.11.07),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3-140호(2013.12.1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91호(2015.7.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7호(2016.4.2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15호(2017.2.1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8-22호(2018.3.1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109,982.1	-	109,982.1	• 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1-142호 (2001.7.10.)

나.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구분	계 획 지 표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중심지 미관지구, 방화지구	• 변경없음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700%이하 - 허용용적률 : 600~800%이하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표		비고
		기정	변경	
높이		• 최고높이 150m이하	• 변경없음	
용도	불허 용도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변경없음	
	권장 용도	• 주거시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복합된 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전자, 전기관련상가 • 관광숙박시설	• 변경없음	
	지정 용도	• 관광숙박시설(5구역)	—	폐지
건축선		• 간선가로변 : 건축한계선 10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공원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 변경없음	
공공시설 부지 제공률		• 공공용지 부담률 : 22.6%이상 • 도로 및 용산역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폭 65m 이상의 공원 설치·조성후 공용화 조치 제공 • 동서녹지축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	• 변경없음	
기타 계획지침		• 도시환경정비 구역내 기존 대규모 토지(예:세계일보 사, 국제빌딩등)는 사업시행시 기존시설 인근에 집단 적으로 조성토록하고 분할 등에 따른 불합리한 개발 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 국제빌딩주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서울시고시 제2007-253호(2007.7.26.) 및 용산구고시 제2010-4호(2010.3.12) 결정사항 준용	• 변경없음	

※ 1) 건축물 주용도는 제시된 권장용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되, 선택된 주용도에 한해서 권장용도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2) 국제빌딩주변 1구역(태평양부지)은 기 결정된 정비계획(서울시고시 제2013-140호) 준용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도	지정용도 폐지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 만료에 따른 주용도 변경

다. 특별계획구역(5구역) 인센티브 계획 : 신설

■ 인센티브 계획

항목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보상계수	적용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 시설	구분	1만㎡ 이상	3천㎡ ~ 1만㎡ 미만	3천㎡ 미만	기존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녹색건축물	그린1등급 (최우수)	그린2등급(우수)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에너지총량	240(kWh/㎡ · y)	260(kWh/㎡ · y)				
			신재생 에너지	11%이상 비주거 7%이상 주거	10%이상 비주거 6.5%이상 주거				
계획 유도	도시 경제 활성화	용산지역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상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정률	0.25	최대100%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지식기반산업시설 도입시						
			업무전용빌딩(업무시설 50%이상 복합) 설치시						
	주거 안정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전용 60㎡ 이하, 연면적 20% 이상)				정량	50%	최대50%
	문화· 관광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0.1	최대30%
	공익 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록대상, 영유아보육법 신고대상,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 시설 도입시				정률	0.1	최대50%
		특정층(최상층) 개방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 (전망대 로비) 조성시						
		실내 공개공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시 (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	각 30%	최대50%
		무장애도시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최우수 등급 인증시						
		공공보행통로 등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시				정률	2	최대30%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소방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인정시)				정량	30%	최대30%

※ 1) 상기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에 한하여 적용

2) 그 외 구역은 용산지구단위계획상 인센티브 계획 준용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인센티브 계획	•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인센티브 적용요건과의 정합성 확보

2. 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	109,982.1	-	109,982.1	• 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6-142호 (2006.4.20.)

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시행면적(㎡)			비고
			계	대지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소계	-	-	109,982.1	67,376.2	42,605.9	-
기정	1구역	한강로 2가 424 일대	26,783.9	14,507.5	12,276.4	-
기정	2구역	한강로 2가 191 일대	11,694.6	11,694.6	-	-
기정	3구역	한강로 2가 189 일대	12,314.8	7,221.2	5,093.6	-
기정	4구역	한강로 3가 63-70 일대	53,066.1	30,393.4	22,672.7	-
기정	5구역	한강로 2가 210-1 일대	6,122.7	3,559.5	2,563.2	부담률 20.48%
변경	5구역	한강로 2가 210-1 일대	6,122.7	3,559.5	2,563.2	부담률 22.25%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9,982.1	－	109,982.1	100.0	－
획지	소계	67,376.2	－	67,376.2	61.2	－
	1구역	14,507.5	－	14,507.5	13.2	1획지
	2구역	11,694.6	－	11,694.6	10.6	2획지
	3구역	7,221.2	－	7,221.2	6.6	3획지
	4구역	30,393.4	－	30,393.4	27.6	4획지
	5구역	3,559.5	－	3,559.5	3.2	5획지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42,605.9	－	42,605.9	38.8	－
	도로	13,310.2	－	13,310.2	12.1	－
	공원	23,043.8	－	23,043.8	21.0	문화, 어린이, 가로공원 각 1개소
	녹지	4,059.0	－	4,059.0	3.7	경관, 연결녹지 각 1개소
	공공청사	2,192.9	－	2,192.9	2.0	주민센터, 공원관리소 각 1개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9,982.1	—	109,982.1	100.0	
주거 지역	소 계	7,111.1	—	7,111.1	6.4	
	제1종일반주거지역	2,998.5	—	2,998.5	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420.9	—	2,420.9	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1.7	—	1,691.7	1.5	
상업 지역	소 계	102,871.0	—	102,871.0	93.6	
	일반상업지역	102,871.0	—	102,871.0	93.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도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3	9	40~46	주간선 도로	일반도로	4,000	서울역 광장	한강 제1 인도교북단	총독부고시 제757호(39.9.18)	도시철도 (정거장) 일부 중복결정 (408.7㎡)
기정	대로	2	57	30~70	주간선 도로	일반도로	2,450 (91)	한강로3가 (광로3-9)	서빙고 초등학교	건설교통부고시 제1978-64호 (78.3.29)	—
기정	대로	3	4	25	집산 도로	일반도로	200	한강로2가 (광로3-9)	용산동5가 2-4	서울시고시 제2010-438호 (10.12.2)	—
기정	중로	1	9	20	집산 도로	일반도로	245	한강로3가 63-99	용산동5가 2-49	서울시고시 제2003-140호 (03.6.5)	—
기정	중로	2	7	15	집산 도로	일반도로	231	용산동5가 2-4	용산동5가 1-13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중로	2	8	15	집산 도로	일반도로	45	용산동5가 2-43	한강로2가 187-7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소로	1	11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116	한강로2가 225-1	한강로3가 63-132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소로	1	12	10	집산 도로	일반도로	157	한강로3가 63-1	한강로3가 63-132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소로	1	13	10	특수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72 (35)	한강로2가 221-1	한강로3가 63-46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06. 4.20)	—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4	10	집산 도로	일반도로	201	한강로3가 63-1	한강로3가 63-46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소로	1	5	8.2	특수 도로	지하도로 (지하보행통로)	18.34	한강로2가 191-4	한강로2가 191-4	용산구고시 제2011-99호 (12.1.5)	-
기정	소로	1	6	8.0	특수 도로	지하도로 (지하보행통로)	25.3	한강로3가 424-4	한강로2가 418	서울시고시 제2012-122호 (12.5.10)	-

※ ()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내 사항임

2) 지하도로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위 치	내 용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도로 (중로2-7일부)	한강로2가 191-4	길이	18.34m	용산구고시 제2011-99호 (12.1.5)	-
			폭	8.2m		
			높이	지하6.82m~지하2.5m (해발고도 5.48m~9.8m)		
			면적	150.81㎡		
기정	소로 1-6	한강로2가 418 일대	길이	25.3m	서울시고시 제2012-122호 (12.5.10)	-
			폭	8.0m		
			높이	지하8.35m~지하2.25m (해발고도 4.45~10.55m)		
			면적	202.5㎡		

※ 상기 지하도로에 관한 사항은 추후 측량성과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3) 공원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문화공원	한강로3가 63-113일원	17,635.3 (1,654.2)	-	17,635.3 (1,654.2)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용산동5가 30-4일원	2,998.5	-	2,998.5	건설부고시 제187호(62.12.20)	-
기정	공원	가로공원	한강로2가 424-1외 1필지	2,410.0	-	2,410.0	서울시고시 제2012-122호 (12.5.10)	도시철도 (정거장) 일부 중복결정 (563.3㎡)

※ ()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내 사항임

4) 녹지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연결녹지	한강로2가 220-4일원	3,052.8 (465.5)	-	3,052.8 (465.5)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기정	녹지	경관녹지	용산동5가 1-44일원	1,006.2	-	1,006.2	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06.4.20)	-

※ ()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내 사항임

5) 철도(정거장)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폭(m)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한강로2가 181 일원	21	206	5,715.4	서울시고시 제1981-287호 (81.7.30)	-

※ 972㎡는 가로공원(563.3㎡) 및 광로3-9호선(408.7㎡)과 중복 결정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주민 자치센터	용산동5가 31외 1필지	1,691.7	-	1,691.7	서울시고시 제2012-122호 (12.5.10)	-
기정	공공청사	공원관리소	용산동5가 32 일원	501.2	-	501.2	서울시고시 제2013-373호 (13.11.7)	-

7) 공공청사 건축규모 :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건축규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공공청사	주민자치 센터	용산동5가 31외 1필지	1,691.7	-	1,691.7	50이하	250이하	40이하	-
공공청사	공원관리소	용산동5가 32 일원	501.2	-	501.2	38이하	70이하	6.5이하	-

라. 비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신설

1) 공공청사(건축물의 입체적 범위 결정)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 청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원	연면적(㎡)	-	증) 600.0	600.0	-	국제5구역 내
				층수	-	증) B3, 5F	B3, 5F		

※ 1) 공공청사 연면적(600㎡)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며,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순부담률 기준(22.25%이상)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서울시를 관리청으로 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착공전까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정하도록 함

2) 공공시설 등 제공내역

구분		내용	비고
공공청사 연면적	지상5층	414.1㎡	- 계획연면적 - 지하3층/지상5층 - 지하층은 주차장 연결을 위한 공용 및 주차장·기계·전기실 등 면적
	지하3층	185.9㎡	
	소계	600.0㎡	
건축비		2,384,000원/㎡	- 서울시 에너지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비(2015) - 공공업무사무소 공사비(연면적 500~1,500㎡) 적용
설치비용		1,430,400,000원	- 설치비용 : 건축비 × 건축연면적 - 2,384,000원/㎡ × 600.0㎡ = 1,430,400,000원
부지가액		36,878,918원	토지별 공시지가 평균 × 2배
환산부지면적		38.8㎡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430,400,000원 ÷ 36,878,918원/㎡ = 38.8㎡
토지지분		40.8㎡	- 대지면적 × 공공청사 연면적 비율 - 3,559.5㎡ × 1.15% = 40.8㎡
총 제공면적		79.6㎡	부담률 : 1.30%

※ 상기내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4, 서울시)」에 의거하였으며, 부지가액 등은 사업계획 승인시 재산정하여 반영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1	26,783.9	1	14,507.5	한강로2가 424일원	업무 (판매,문화·집회)	60이하	850이하	110이하	-
존치	2	11,694.6	2	11,694.6	한강로2가 191일원	업무, 근생, 판매	-	-	-	-
기정	3	12,314.8	3	7,221.2	한강로2가 189일원	주거복합 (주거,업무,판매)	37.33	700이하	120이하	-
기정	4	53,066.1	4	30,393.4	한강로3가 63-70일원	주거복합 (주거,업무,판매·종교)	60이하	805이하	150이하	-
기정	5	6,122.7	5	3,559.5	한강로2가 210-1일원	관광숙박시설 (의료관광호텔)	60이하	1,160이하	150이하	-
변경	5	6,122.7	5	3,559.5	한강로2가 210-1일원	주거복합 (주거,업무,판매)	60이하	894이하	150이하	-

※ 국제빌딩주변구역 전체 주거비율은 40%이하로 하되, 사업시행구역별 주거비율은 오피스텔 포함 70%이하로 할 것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세대수	• 105세대		
		주거비율	• 50%미만 (제5구역)		
	심의완화사항	기준용적률	• 387.5%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종전 용도지역별 용적률 가중평균)		
		허용용적률	• 654.2%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량		
			구분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량
			의무	녹색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신재생에너지	100.0%
			계획유도	가로활성화용도, 무장애도시조성, 벤처기업, 방재관련시설	167.0%
		상한용적률	• 894%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 + 건축물 기부채납)		
			구분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 기부채납	$\text{허용용적률} \times (1.3 \times \alpha \times \text{가중치})$ $= 654.2 \times (1.3 \times 0.2575 \times 1.0065)$	220.4%
			건축물 기부채납	$\text{허용용적률} \times [1.3 \times \{\text{총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 \text{총제공면적})\}]$ $= 654.2 \times [1.3 \times \{79.6 \div (3,559.5 - 79.6)\}]$	19.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10m : 한강로 및 서빙고로변 • 건축한계선 3m : 연결녹지변			
공공시설 등 부담계획	• 22.25% 이상 • 건축물내 공공청사 연면적(600㎡)중 전용면적(188.4㎡)에 대해서만 설치 후 기부채납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한강로3가 63-70일원	1,653.47	1	19,286.85 (전용 7,848.04㎡)	194	40.22㎡ ~ 40.68㎡	4구역 주거동내 194세대 건설 - 부지면적은 향후 구체적인 실시설계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사.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철거형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국제빌딩주변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

4. 변경사유

- 최초 구역지정 이후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용도를 변경(의료관광호텔→주거복합)하고자 함

5.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6.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35)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41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빌딩주변구역 정비계획도(기정)



■ 국제빌딩주변구역 정비계획도(변경)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계획도(기정)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계획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74호

2018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 가. 심의일시 : 2018. 3. 8.(목) 14:00 ~ 17:0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12건 21작품 (조각 17, 부조 3, 회화 1)
 라. 심의결과 : 승인 6작품, 부결 15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8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서대문구 홍제원 아이파크	부조	Resilience-숲		○	벽과 작품의 부조화. 단조로움. 콘텐츠 부족. 훼손, 유지관리 우려, 작품성 부족.
1-2		부조	만월		○	벽과 부조화. 훼손, 유지관리 우려. 대상지에 비해 작품규모 작음.
2-1	강서구 보타닉파크타워III	조각	Winner`s face - Ego		○	장식성이 강함. 조형성 부족.
2-2		조각	Shine		○	평이함. 건물과 부조화. 가격 과다.
3	중구 신당KCC스위첸	조각	point of view 20171218-cube		○	평이함. 조형성 부족. 작품성 부족. 주변 환경과 부조화.
4-1	강서구 마곡지구 C6-1 업무시설	조각	생각의 층 (Layers of Thought)		○	조각과 공간의 부조화. 설치장소 부적절.
4-2		회화	One`s home town 1609		○	평이함. 주변 환경과 부조화. 위치 부조화.

2018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8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5-1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	조각	AscendingHELIX (상승나선上昇螺旋)	○		
5-2		조각	The beauty of nature		○	평이함. 가격 과다. 조형성, 작품성 부족. 주변 환경에 비해 왜소.
5-3		조각	향기로운 날의 꽃		○	평이함. 작품성 부족. 장식성이 강함.
5-4		조각	Blooming		○	평이함. 유사작품 다수. 특징 없고 일반적임
5-5		부조	Montage-해송		○	작품성 부족. 가격 과다. 주위 환경과 부조화
6	목동 롯데캐슬	조각	빛의 숲 - 봄		○	평이함. 조형성 부족. 작품성 부족. 가격 과다. 장식성이 강함.
7	강서구 센테니아	조각	쉽없이 도는 팽이 infinity levitating top	○		
8-1	강남구 강남N타워	조각	METROPOLIS	○		
8-2		조각	UNE EXTENSION (확장)	○		
9	서초구 현대썬앤빌	조각	생명의 나무		○	평이함. 작품성 및 조형성 부족. 작품의 구성요소가 산만하고 일관성 부족.
10	강서구 마곡W타워II	조각	환영-파랑새		○	평이함. 가격 과다. 장식성 과다. 조형성 부족. 주변 환경과 부조화.
11	도봉구 금강아미움파크타운	조각	걷는 사람	○		(권장) 좌대를 없애는 것 고려
12-1	동대문구 답십리 래미안 미드카운티	조각	환원-이미지 1801	○		
12-2		조각	꽃을 든 손		○	조형성 및 완성도 부족. 독창성 부족. 주변 환경과 부조화.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76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별첨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8. 3.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납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납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284-5421-8347, 팩스번호: 02-841-6458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7길 *3-6 *01호 (구로동)	일시: 2017-06-08 10:58 장소: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교 내용: 높이 초과, 초과값:0.28m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334,200원 납기일: 2018-03.31
이*철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02-8 *층 (*동, 태우주택)	일시: 2017-06-12 10:54 장소: 영등포.여의도.가양대교입구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4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51,000원 납기일: 2018-03.31
김*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5길 *0 *01호 (신림동)	일시: 2017-06-12 11:26 장소: 관악구 신림동 호암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8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51,000원 납기일: 2018-03.31
안*민	경기도 시흥시 신천2길 10 *층 *호 (신천동)	일시: 2017-06-17 11:22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1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51,000원 납기일: 2018-03.31
경*필	경기도 고양.일산서구 대산로 *41 *02동 1802호 (주엽동, 문춘마을)	일시: 2017-06-28 14:41 장소: 금천구 독산동 시흥IC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9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51,000원 납기일: 2018-03.31
신*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1-12 4층 (봉천동)	일시: 2017-07-05 07:42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8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이*섭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80 (검암동)	일시: 2017-07-12 07:38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8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763,000원 납기일: 2018-03.31
심*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공원로4길 2*-1 *02호 (사동)	일시: 2017-07-12 15:54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8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강*철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3번길 18 *05호 (용현동)	일시: 2017-07-14 09:02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0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육*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0길 5*-3 (북가좌동)	일시: 2017-07-17 14:55 장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도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2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김*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41길 *2 *01호 (미아동, 월드아파트)	일시: 2017-07-21 07:20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3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최*혁	강원도 양구군 동면 바랑길 *8	일시: 2017-07-21 11:00 장소: 영등포.신길동 대방천32톤위반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7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272,500원 납기일: 2018-03.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노*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7번길 29 *02호 (연수동)	일시: 2017-07-26 07:49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이*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8 *02 (본오동)	일시: 2017-08-02 07:30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8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45,000원 납기일: 2018-03.31
윤*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08호 (양재동, 윈드스톤호피스텔)	일시: 2017-08-04 07:05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4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763,000원 납기일: 2018-03.31
유*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38 *04호 (연수동)	일시: 2017-08-05 11:23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7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1,078,000원 납기일: 2018-03.31
최*진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291번길 29 2*2동 3*1호(부곡동, **시아아파트)	일시: 2017-08-07 10:13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8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9,000원 납기일: 2018-03.31
김*수	경기도 의왕시 신장승길 12 *06동 *03호 (삼동, 장안마을***아파트)	일시: 2017-08-08 07:23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3.75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9,000원 납기일: 2018-03.31
유*열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05 1*동 2*5호(송림동, 인천**용품유통센터)	일시: 2017-08-08 22:45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7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9,000원 납기일: 2018-03.31
김*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8 *28동 *06호 (본오동, 월드아파트)	일시: 2017-08-11 11:01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0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9,000원 납기일: 2018-03.31
고*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90 (도내동)	일시: 2017-08-16 14:34 장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2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9,000원 납기일: 2018-03.31
김*수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97-25 (을왕동)	일시: 2017-08-18 10:31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4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9,000원 납기일: 2018-03.31
김*환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91번길 *6-20 *01호 (용현동, 풍경채)	일시: 2017-08-30 20:36 장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내용: 폭 초과 초과값:0.15m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8-03.31
최*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49 *02동 508호 (행신동, 소만마을)	일시: 2017-09-06 10:33 장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올림픽대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9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8-03.31
김*현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10번길 42 *03호 (정왕동)	일시: 2018-03-12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천로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4.9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8-03.31
손*길	인천광역시 강화군 청하동길36번길 20 *01호(강화읍, 신문리,**아파트)	일시: 2017-09-07 14:20 장소: 금천구 가산동 금천교 내용: 높이 초과 초과값:0.28m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319,800원 납기일: 2018-03.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한*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98 1*8동2*4호(**동,**e편한세상아파트)	일시: 2017-09-14 09:45 장소: 구로.가리봉동 가리봉철도가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8.15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852,800원 납기일: 2018-03.31
김*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72번길 36 1*1동 1*03호(작전동, **아파트)	일시: 2017-09-18 09:56 장소: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유수지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1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33,000원 납기일: 2018-03.31
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0길 *5-22 (신월동)	일시: 2017-09-22 11:00 장소: 동작구 노량진동 노들고가 내용: 총중량 초과 초과값:6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852,800원 납기일: 2018-03.31
전*찬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56번안길 8 *01호 (마전동)	일시: 2017-10-10 14:50 장소: 영등포구.여의도동. 여의상류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35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27,000원 납기일: 2018-03.31
김*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0길 14 *층 (화곡동)	일시: 2017-11-03 11:02 장소: 서초구 서초동 올림픽도로 내용: 축하중 초과 초과값:1.35t,	처분일: 2018-03.12 과태료: 527,000원 납기일: 2018-03.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9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80015	(주)동훈건설 (등기:(주)더블에이브릿지)	김태훈 (등기: 구세현)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등기: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비동834호)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2	서울080084	대양건설(주)	김서환,김용갑 (등기 이석원)	종로구 자하문로 30 (등기: 강남구 봉은사로 516, 507호)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3	서울080254	휘닉스개발투자(주)	전병국 (등기:이석원)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6,7층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4	서울08041	지클레프리트(주)	조세현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 7층(서초동,에스엠빌딩)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 나.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등록요건(사무소 부존재 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92호**

부동산개발업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1	서울080139	(주)알투엠개발	현승훈	강남구 선릉로 340,109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2	서울080420	(주)세대코건설	박만길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6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3	서울130018	(주)모브건설	조병구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1108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4	서울130025	동구씨엠개발(주)	권대규	송파구 총민로 81-12, 201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연번	대 상 업 체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5	서울130059	(주)벽안개발 (등기: ㈜대광디앤씨)	강봉훈 (등기 강영미)	강남구 테헤란로 313,1411호 (등기: 강남구 테헤란로51길 454)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6	서울150023	(주)아키텐리	이종우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1, 4층 엘에스-12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7	서울150039	삼성주택(주)	전연옥 (등기 문정숙)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609호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8	서울130050	(주)숨마씨앤디	신국철 (등기 김경환)	강남구 삼성로96길 12, 6층	등록요건 미달 (사무소 부존재 등)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8. 3. 22. ~ 2018. 4. 4.

3. 근거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 실시

- 기관명: 서울특별시청(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류지순, 전자우편: jisun73@seoul.go.kr)
- 주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2동2층(서소문동)(☎ 02-2133-4684~5, FAX 02-768-8920)
-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14:00부터 17:00까지(3시간)
- 장소: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
- 주재자 소속 및 성명: 토지관리과 지방시설주사 김영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AX, e-mail 이용하실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제1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9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다올웨스턴 등 402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18. 03. 16 ~ '18. 03. 30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 03. 30. ~ 2018. 04. 10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5,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83저0218	(주)다올웨스턴	2018-02-03	경기도 고양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	62우9195	(주)단비엔터프라이즈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	48저2495	(주)디자인칸투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4	29노8865	(주)라군	2018-02-01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	40고9971	(주)바이오앤텍	2018-02-02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	22하5686	(주)아이인	2018-01-29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7	35하7040	(주)인앤아웃컨설팅	2018-01-10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8	58저2837	(주)크림하우스푸드	2018-02-02	충청북도 음성군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	63우9319	(주)해성청과	2018-02-01	경기도 구리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0	84오7272	건스틸(주)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11	60우0169	농업회사법인(주)다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2	46하9565	대성기계주식회사	2018-0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3	01하6730	더베스트성원	2018-01-17	서울특별시	669 성지사우나	전용차로위반	50,000
14	22보1998	동덕건설(주)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5	67호6072	씨스토리	2018-01-25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6	16머3993	오엘디앤씨(주)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	46하9457	윤사무엘	2018-01-03	경기도 안양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	31수4763	제너두디자인주식	2018-02-01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9	63소6055	제이엔케이파트너	2018-02-01	경기도 양주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0	서울46도5811	주-나이백	2018-02-01	서울특별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	서울46도5811	주-나이백	2018-02-01	서울특별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	91머6018	주문석	2018-02-02	경기도 김포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3	69보4567	주식회사거승산업	2018-02-02	경기도 김포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4	20마1188	주식회사루다홀딩	2018-02-01	서울특별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	20마1188	주식회사루다홀딩	2018-02-01	서울특별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	81주5259	주식회사삼정카렌	2018-02-01	경기도 파주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	55구0249	주식회사씨엘에프	2018-02-02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8	54호4264	주식회사착한개발	2018-01-1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	38다3402	주식회사코리아통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	62호5929	주식회사타이어하	2018-01-02	경기도 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	62하7825	지에이코리아주식	2018-01-04	서울 영등포구 문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2	08허5588	칸아라올래안	2018-01-26	경상남도 창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	94수8311	A**	2018-02-02	경기도 군	50-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	45초9373	J**	2018-02-03	충청남도 천안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	65호7083	J**	2018-01-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6	49마4660	J**	2018-02-01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7	01저1606	J**	2018-02-01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	18가1939	J**	2018-02-03	서울특별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	55루7304	K**	2018-02-02	광주광역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0	03거7138	L**	2018-02-02	경기도 평택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	03거7138	L**	2018-02-02	경기도 평택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	49루4608	L**	2018-02-01	충청남도 천안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	53더5482	L**	2018-02-01	경기도 부천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4	14수5213	L**	2018-02-02	경기도 이천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	20여3230	L**	2018-02-01	경기도 군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6	82고8609	O**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47	54루9933	T**	2018-02-03	인천광역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	69하4124	Y**	2018-01-27	서울특별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9	69하4124	Y**	2018-01-27	서울특별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	12너7560	Z**	2018-02-01	서울특별시	50-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	42부3567	가**	2018-02-03	경기도 가평군	잠원동 잠원현	전용차로위반	50,000
52	30노9985	강**	2018-02-01	서울특별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53	04구5270	강**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54	01하3179	강**	2018-01-2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55	52두6098	강**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56	57누9483	강**	2018-02-02	경기도 양주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57	01두1452	강**	2018-02-02	경상북도 안동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58	02소2179	강**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9	40여6608	강**	2018-02-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0	01더5803	강**	2018-02-0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1	68수4511	고**	2018-02-02	서울특별시	행당동 한양대	전용차로위반	50,000
62	42주3049	고**	2018-02-01	경기도 과천시	대치동 은마아	전용차로위반	50,000
63	38누1664	곽**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4	19조4296	곽**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5	19조4296	곽**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	08하1042	구**	2018-01-27	울산광역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	10루2084	권**	2018-02-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68	10도5199	권**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9	52호5571	권**	2018-01-2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0	54무9102	권**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1	07수0788	권**	2018-02-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7조3638	권**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3	87조1196	김**	2018-02-01	경기도 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4	65호3408	김**	2018-01-22	강원도 고성군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	14하4086	김**	2018-01-12	서울특별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76	61로0994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77	82부2942	김**	2018-02-01	경상북도 경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78	61마0800	김**	2018-02-01	강원도 원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79	18하2187	김**	2018-01-30	서울특별시	28-5, 현충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0	01하2820	김**	2018-01-09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1	85누4112	김**	2018-02-01	경기도 화성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	13구2546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	전용차로위반	50,000
83	39구6732	김**	2018-02-02	경기도 구리시	삼육대학교(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4	69우1221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85	02소3719	김**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4너5657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87	28서5064	김**	2018-0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88	54루8125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9	16모1970	김**	2018-02-03	경기도 부천시	동양미래대학	전용차로위반	50,000
90	67저5616	김**	2018-02-01	울산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91	51조4965	김**	2018-02-01	경기도 화성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92	84주5065	김**	2018-02-03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3	서울32바2552	김**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866-1,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94	48다7583	김**	2018-02-02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5	30더2140	김**	2018-02-03	경기도 수원시	48-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96	27수3879	김**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97	39두7274	김**	2018-02-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98	38하6052	김**	2017-12-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9	45가6080	김**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63라8240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40저2075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33루5259	김**	2018-02-02	경기도 성남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07로1871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53라6185	김**	2018-02-01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92라1812	김**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65호7654	김**	2018-01-24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65호7654	김**	2018-01-24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12도3415	김**	2018-02-02	인천광역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36하1449	김**	2018-01-23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82노9763	김**	2018-02-01	서울특별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58호6270	김**	2017-12-05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59가8911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42수5452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15오8909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13-1 소호정알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61나0447	김**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10나8780	김**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29라4041	김**	2018-02-01	경상북도 영주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54소4170	김**	2018-02-02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19노7932	김**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서울85자6522	김**	2018-02-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38더8692	김**	2018-02-02	충청남도 천안시	49-반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95가0268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08두6268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22다6491	김**	2018-02-01	제주특별자치도 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91주6679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33고1021	김**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16하6633	김**	2018-01-11	경상북도 구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22거2399	김**	2018-02-01	경기도 안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22거8102	김**	2018-02-02	인천광역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62하4443	김**	2018-01-09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35하7846	김**	2018-01-10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16거1330	김**	2018-02-02	경기도 용인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40하9765	김**	2018-01-22	경기도 수원시	47-서초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26수5807	김**	2018-02-02	경기도 용인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21로2986	김**	2018-02-02	전라남도 광양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0하1074	김**	2018-01-17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46더3425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53하5906	김**	2018-01-0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51하1057	김**	2017-12-31	대전광역시	48-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23비5231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38나5629	김**	2018-02-02	대구광역시	51-양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49서5341	김**	2018-02-02	경기도 안양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13마5370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61거7308	김**	2018-02-01	경기도 수원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69라6334	김**	2018-02-01	서울특별시	2 여의도공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32어1741	김**	2018-02-0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67호1866	김**	2018-01-03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31우8901	김**	2018-02-03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31어8056	남**	2018-02-02	경기도 수원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17누8212	남**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48- 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36노8871	노**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09소9690	노**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55라4139	류**	2018-02-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41오2793	류**	2018-02-01	경기도 양평군	50-서초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서울31아8244	명**	2018-02-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40하1458	민**	2018-01-12	서울특별시	47-서초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52우0442	박**	2018-02-02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37두3097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07하4736	박**	2018-01-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29호6990	박**	2018-01-1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35무4483	박**	2018-02-0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50서7471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66더0555	박**	2018-02-02	대구광역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30도3188	박**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26두5056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27주0294	박**	2018-02-02	경기도 이천시	행당동 한양대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23어1211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03주0842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51머1205	박**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18호7252	박**	2018-01-11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서울31사3558	박**	2018-02-01	경기도 의정부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01너7846	박**	2018-02-0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29호5375	박**	2018-01-24	충청남도 아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16우2057	박**	2018-02-03	서울특별시	58-양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04초6520	박**	2018-02-01	인천광역시	48- 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38로4086	박**	2018-02-03	충청남도 태안군	48- 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경기35바4636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53초4919	박**	2018-02-01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42두9766	박**	2018-02-01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38라0844	박**	2018-02-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08마3700	박**	2018-02-02	서울특별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29호7787	박**	2018-01-05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62수4235	박**	2018-02-01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80노8088	박**	2018-02-02	경기도 평택시	58-양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05서9637	박**	2018-02-03	강원도 양구군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29나3595	박**	2018-02-01	경상북도 포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32서8113	박**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35나6588	반**	2018-02-0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62하1964	배**	2018-01-3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78머7660	백**	2018-02-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60,000
191	15머3763	백**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01하8066	백**	2018-01-04	인천광역시	51-양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66거9004	변**	2018-02-02	경기도 여주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56로9841	변**	2018-02-03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69보9280	서**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17구7416	서**	2018-02-02	인천광역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61더1256	서**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02나1117	서**	2018-02-03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46비3467	서**	2018-02-02	서울특별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32수6319	서**	2018-02-02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13서0218	석**	2018-02-02	경기도 고양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15비1558	성**	2018-02-01	서울특별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14허1393	성**	2018-01-08	서울특별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53마8549	성**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65호6826	세**	2018-01-30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14로1720	소**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24두7613	소**	2018-02-02	전라북도 남원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50마5845	손**	2018-02-02	경기도 안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23누2279	손**	2018-02-0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27너4943	손**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81나4329	손**	2018-02-03	충청남도 아산시	58-양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03마4607	손**	2018-02-02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49루1606	손**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21조3755	송**	2018-02-02	충청남도 천안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83부2917	송**	2018-02-02	경기도 시	49-반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31비2489	송**	2018-02-02	경기도 고양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42누2560	송**	2018-02-02	충청북도 청주시	58-양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68호2290	신**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53우3187	신**	2018-02-0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95저8225	신**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08서6339	신**	2018-02-01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47너5112	신**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53우5008	심**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60부7990	심**	2018-02-03	경기도 이천시	중화동 메디렌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04노1737	안**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56다8302	안**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58수1225	양**	2018-02-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50조8155	양**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41부9217	양**	2018-02-01	경기도 평택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50라9769	양**	2018-02-0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45부9120	엄**	2018-02-03	대전광역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01도1901	엄**	2018-0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50라5322	연**	2018-02-01	서울특별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19다6636	엄**	2018-02-01	경기도 과천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97호0157	오**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33가0670	오**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35로9708	오**	2018-02-0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80주8621	오**	2018-02-02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서울85자1985	오**	2018-02-03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28다8519	오**	2018-0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20호1823	왕**	2018-01-19	서울특별시	48-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19머8315	원**	2018-02-01	경기도 오산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07허2322	원**	2017-12-12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08가9147	유**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30라0192	유**	2018-02-03	경기도 화성시	50-서초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20로3439	유**	2018-02-01	경기도 의정부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52주8836	유**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43수5687	유**	2018-02-03	경기도 오산시	49-반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48버2819	유**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서울89자5854	유**	2018-02-01	서울특별시	48-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21마5404	윤**	2018-02-02	대전광역시	51-양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36우0377	윤**	2018-02-03	서울특별시	50-서초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14조1698	윤**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39소0982	윤**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58가5702	윤**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07라4420	윤**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서울32사5779	윤**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24보8866	윤**	2018-02-02	경기도 안양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60노1491	윤**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서울98바5193	윤**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60,000
261	40무0385	윤**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14허4120	이**	2018-0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16주2580	이**	2018-02-01	대구광역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84부1640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59오3255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61도0279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68초0933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26더9040	이**	2018-02-01	경기도 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43두9247	이**	2018-02-02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32부4432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잠실동 엘스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66더3612	이**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45두9039	이**	2018-02-02	경기도 구리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52초3900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45무5022	이**	2018-02-02	인천광역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67라5726	이**	2018-02-03	인천광역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41로0977	이**	2018-02-02	인천광역시	58-양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23머6659	이**	2018-02-03	충청남도 당진시	49-반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43머8467	이**	2018-02-02	경기도 군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87더8443	이**	2018-02-01	경기도 성남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63더1280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29호6900	이**	2018-01-04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02머0284	이**	2018-02-03	경기도 용인시	49-반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65호3450	이**	2018-01-1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경기81자8354	이**	2018-02-01	경기도 성남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18루5080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23두5009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내곡동 시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49서4985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57서0278	이**	2018-02-03	경기도 광주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30허5032	이**	2017-12-20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서울32사8576	이**	2018-02-01	경기도 의정부시	37-월계주공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01수0637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55더6734	이**	2018-02-01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65다8641	이**	2018-02-02	경기도 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34서9920	이**	2018-02-01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09가0566	이**	2018-02-02	경기도 용인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22머0743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23로0700	이**	2018-02-0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10하1228	이**	2018-01-22	서울특별시	47-서초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10하1228	이**	2018-01-22	서울특별시	48-반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12무3484	이**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16더4970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67구9994	이**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태릉강릉(서울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01초1412	이**	2018-02-03	서울특별시	58-양재IC 상형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81머3382	이**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65저5042	이**	2018-02-02	경기도 양주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40누1521	이**	2018-02-03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66머4250	이**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22머3443	이**	2018-02-03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형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39거0927	이**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29호5929	이**	2018-01-18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05주0448	임**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86고7378	임**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43두0704	임**	2018-02-02	서울특별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20호7548	임**	2017-10-18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09거6513	임**	2018-02-0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14허4071	임**	2018-01-24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10러1348	장**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56고3959	장**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43무6097	장**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68누1034	장**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15무7229	장**	2018-02-01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47버5316	장**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38무0651	장**	2018-02-02	경기도 고양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53도0578	전**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65호4959	전**	2018-01-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05머9222	전**	2018-02-02	세종특별자치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34로2616	전**	2018-02-02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52무0773	정**	2018-02-0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19주8437	정**	2018-02-01	충청남도 아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42오2802	정**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54머3322	정**	2018-02-02	충청북도 제천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49고5515	정**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45서8352	정**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68무8762	정**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01호1198	정**	2017-12-1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16러7807	정**	2018-02-02	경기도 의정부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10수3730	정**	2018-02-02	경기도 파주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63머5832	정**	2018-02-01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55조6743	정**	2018-02-01	경기도 안양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11조9556	정**	2018-02-01	서울특별시	48-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64루2190	정**	2018-02-03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57더6047	조**	2018-02-02	경기도 김포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16수8908	조**	2018-02-02	경기도 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58너6491	조**	2018-02-0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61버4880	조**	2018-02-03	경기도 구리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23가4526	조**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38머7626	조**	2018-02-03	경기도 화성시	49-반포IC 하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68하4606	조**	2018-01-29	경기도 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64어8673	조**	2018-02-02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서울31아5111	조**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38거0713	조**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29호7075	조**	2018-01-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48소2435	조**	2018-02-01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66거5836	지**	2018-0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42두6954	진**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66오1745	진**	2018-02-01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42부8604	차**	2018-02-02	인천광역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67다6051	차**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43거8470	채**	2018-02-03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36나8534	최**	2018-02-02	서울특별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22저3241	최**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17도0836	최**	2018-02-02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81라2283	최**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68우2772	최**	2018-02-03	경기도 수원시	48-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68우2772	최**	2018-02-03	경기도 수원시	47-서초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97고9671	최**	2018-02-01	경기도 광주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55저5383	최**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여대(구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82로2751	최**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29하6862	최**	2018-01-27	경기도 군	47-서초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13가2621	최**	2018-02-03	서울특별시	50-서초IC 하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62조2543	최**	2018-02-03	경기도 수원시	39-이대후문 경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97도3220	최**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59수3735	최**	2018-02-0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25보0459	최**	2018-02-01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36루3412	최**	2018-02-01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34호5503	최**	2018-01-19	경기도 용인시	668 숲고집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01저9804	최**	2018-02-02	경기도 하남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서울31바2038	최**	2018-02-02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51우5113	최**	2018-02-0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04구5557	최**	2018-02-02	경기도 오산시	행당동 한양대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67하4995	하**	2018-01-2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05누9441	하**	2018-02-03	인천광역시	47-서초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63우9183	한**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10머3238	한**	2018-02-03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서울31사8473	한**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65더8389	한**	2018-02-01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14하3861	한**	2018-01-3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48가4658	함**	2018-0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46호4157	허**	2018-01-25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60구2409	허**	2018-02-02	충청남도 천안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59라9944	허**	2018-02-02	경기도 평택시	내곡동 GS파크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29호1931	허**	2018-01-0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11수9998	현**	2018-02-01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38두0283	홍**	2018-02-02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18주5485	홍**	2018-02-0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42너7303	홍**	2018-02-03	서울특별시	잠실동 잠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26도6774	홍**	2018-02-02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서울85자1822	황**	2018-02-02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서울85자1822	황**	2018-02-01	서울특별시	대치동 개포우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31어6455	황**	2018-02-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서울35바4469	황**	2018-0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67고4007	황**	2018-02-0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9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전득수	경상북도김천시시청1길**4, *0*호 (신음동)	일시 : 2017-11-07 04:50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1.C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65m 초과	과태료:100만원
김명진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번길 * (신장동)	일시 : 2017-11-12 10:45 장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송파대로 내용 : 차량의 축 하중 1.4t 초과	과태료:50만원
박성주	경기도화성시영통로27번길35, *0*-**4호(반월동)	일시 : 2017-11-16 01:05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삼전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이영수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 (천송동)	일시 : 2017-11-24 19:47 장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상일로 내용 : 차량의 축 하중 1.35t 초과	과태료:5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4.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2,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4호(2017.11.09.)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6-3-1,2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2018. 3.22 ~ 2018. 4.5.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11)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02-2148-2686)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02-3396-5753)

다. 공람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지 구 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 ~ 2023.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증 감	
합 계		439,356.4	100.0	439,356.4	100.0	-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58,256.0	36.0	158,256.0	36.0	-	-
	공공청사	7,600.0	1.7	7,600.0	1.7	-	중구청 존치
	학교시설	13,055.1	3.0	13,055.1	3.0	-	덕수중학교 존치
	하천	8,423.4	1.9	8,423.4	1.9	-	청계천
	공원	10,109.7	2.3	8,119.1	1.8	감) 1,990.6	4개소
	녹지	7,541.2	1.7	7,401.0	1.7	감) 140.2	8개소
	연구시설	1,200.0	0.3	1,200.0	0.3	-	-
	도로	110,326.6	25.1	112,457.4	25.6	증) 2,130.8	-
택지 (획지)	소 계	281,100.4	64.0	281,100.4	64.0	-	-
	복합개발용지	254,217.4	57.9	254,217.4	57.9	-	촉진구역
	남산자이(주거복합)	5,216.5	1.2	5,216.5	1.2	-	존치지역
	국도호텔(상업·숙박)	1,800.0	0.4	1,800.0	0.4	-	
	중앙대코플라자	1,060.6	0.2	1,060.6	0.2	-	
	명보아트홀	1,256.5	0.3	1,256.5	0.3	-	
	매일경제신문	1,778.4	0.4	1,778.4	0.4	-	
	세운상가군	15,771.0	3.6	15,771.0	3.6	-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

※ 구체적인 입체·중복결정사항은 V.기반시설 설치계획 참조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⑤ 교통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⑥ 경관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세운2-1~ 세운2-35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38,962.6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35개 구역
기정	세운3-1~ 세운3-10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1,127.3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9개 구역
기정	세운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2,223.7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1개 구역
기정	세운5-1~ 세운5-11구역	중구 산림동82-5번지 일대	38,576.0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11개 구역
기정	세운6-1-1~ 세운6-4-23구역	중구 초동 10-1번지 일대	167,311.4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113개 구역

※ 분할된 구역별 세부면적은 공람도서 참조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기정	세운2-1~8, 25,28,29,32, 33,35구역	간선부	600% 이하	700% 이하	기반 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 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기정	세운3-1~3 3-4,5구역 3-8~3-10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m	90m이하	중규모 구역
기정	세운3-6,7구역	이면부					60m	70m이하	
기정	세운4구역			700% 이하			-	70m이하	통합구역
기정	세운5-1~2,4~6 9~11 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m	90m이하	중규모 구역
기정	세운5-3,7,8, 구역	이면부					60m	70m이하	
기정	세운6-1-1~4, 7~9,11,21,24, 29,32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1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기정	세운6-2-1~5, 7~9,35,36,41, 47,48,50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기정	세운6-3-1,2,4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m	90m이하	중규모 구역
기정	세운6-3-3구역	이면부					60m	70m이하	
기정	세운6-3-5~9 구역	간선부		700% 이하			40m	5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4-1,4,5, 18,22,23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4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 ※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추후 문화재청 협의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운6-3-5~9구역은 소규모구역 이면부의 용적률, 높이 기준 적용

-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⑫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⑮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종로구 장사동 116-4번지 일대	-	증) 45,076.6	45,076.6	45,076.6	존치되는 세운상가군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중구 인현동1가 310-68번지 일대	-	증) 231,984.2	231,984.2	231,984.2	촉진지구 내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⑯ 세운지구 재생관리지침 : 신설
 ㉮ 세운지구 재생관리지침
 - 세운재생자문단 운영 : 시 방침으로 운영 중인 자문단을 촉진계획으로 결정
 - 세운재생자문단 주요자문내용 : 세운활성화, 데크 연결, 옛길(물길), 근·현대 건축물 보존 등
 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령제10조제1항4호 및 제2항4호)
 - 촉진구역 정형화 위한 소규모구역의 구역계 변경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
 - 입체적 보행연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제공에 따라 측량 및 건축계획의 변경
 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9,356.4	-	439,356.4	100.0	
일반상업지역	439,356.4	-	439,356.4	100.0	

㉠ 용도지구

㉡ 미관지구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구간	연장(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종로2가~동대문	2,400	양측12	57,6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종로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시청앞광장~을지로6가	2,700	양측12	64,8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을지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동아일보 앞~청계천6가	2,800	양측12	67,2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청계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필동1가~종로3가	1,000	양측12	24,0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삼일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목정동~종로4가	900	양측12	21,6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목정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서울역~광희동 로터리	3,200	양측12	76,800	건교부고시 519호(73.12.31)	퇴계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태평로~광희로	2,700	양측12	64,8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태평로지구

㉢ 방화지구

■ 방화지구 결정조서(사업시행인가시 폐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5,97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종로
기정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42,609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청계천
기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을지로지구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돈화문간	36,94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돈화문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원남동로터리간	27,345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배오개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종로구 장사동 116-4번지 일대	-	증) 45,076.6	45,076.6	45,076.6	존치되는 세운상가군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중구 인현동1가 310-68번지 일대	-	증) 231,984.2	231,984.2	231,984.2	촉진지구 내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7	40~47 (3.5~ 6.5m)	주간선 도로	4,000 (432)	서대문광장 (종로3가 45-4)	동대문광장 (종로4가 50-10)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4구역
기정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 을지로 - 대림상가 ~ 삼풍 상가(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변경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기정	종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3.26)	- 마른내길 - 호텔PJ~신성상가 (마른내길 상부) 보행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 (폭3.7~44.6m)
변경	종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 722호 (36.3.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4	총무로4 86-3	총무로4가 47-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총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공원면적 일부 도 로 연장 (폭15m) - 삼풍상가~진양상 가 서측 3층 보 행데크 보행자전 용도로결정 (폭3.0~15.0m)
변경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총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는 지구내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총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 19m~26.5m) - 삼풍상가~진양 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 자전용도로결정 (폭4.0~15.0m)
변경	중로	2	127	19~21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총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5	총무로4가 66-3	총무로4가 99-9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89	을지로3가 164-1	입정동 139-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 청계천 북측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 데크 보행자전 용도로 결정 (폭15~16.6m)
변경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474)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	12~ 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 청계천 남측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 행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 (폭15~16.6m)
변경	중로	3	-	12~ 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16	산림동 250-1	입정동 1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1	산림동 278-1	입정동 2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6	주교동 170-1	산림동 8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1	5	10	국지 도로	132	주교동 184-2	산림동 5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1	6	10.5	집산 도로	56	종로	배오개길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16.04.07)	4구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82-3	장사동 233-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99-1	을지로3가 282-9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30	인현동1가 94-3	을지로4가 314-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4	인현동2가 198-2	인현동2가 99-1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36	초동 39-8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87	충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충무로4가 125-44	충무로3가 37-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필동2가 5-3	충무로4가 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15	필동2가 13-20	충무로4가 125-4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70	충무로4가 125-54	충무로4가 12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17	인현동2가 181-47	인현동2가 15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38	인현동2가 181-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19	장사동 106-2	장사동 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종로3가 162-1	종로3가 45-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78	장사동 41-2	장사동 2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79	장사동 47-5	장사동 5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86	장사동 74	장사동 83-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70	장사동 221-3	장사동 21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55	장사동 204-1	장사동 19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67	을지로3가 291-18	을지로3가 291-4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122	을지로3가 285-3	을지로3가 27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2	인현동1가 55-5	초동 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5-5	인현동1가 3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5	초동 22-2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73	인현동1가 58-20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61	인현동1가 59-20	인현동1가 9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5	인현동1가 5-10	인현동2가 95-1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77	인현동2가 99-28	인현동1가 7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3	인현동2가 192-20	인현동2가 20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88	인현동2가 182-11	인현동2가 2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82	충무로4가 24-6	인현동2가 189-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40	필동2가 13-6	필동2가 13-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45	인현동2가 3	인현동2가 1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85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3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6	4	국지 도로	76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79	충무로4가 55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3	대로 2-3	• 대림상가 ~ 삼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대림상가~삼풍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1-29	중로 1-29	• 호텔PJ~ 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7~44.6m)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호텔PJ~신성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3-	중로 3-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15.2~16.6m)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15~15.5m)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청계천 북측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청계천 남측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2-126	중로 2-126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15m) • 삼풍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결정 (폭3.0~15.0m)	• 다시세운광장(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삼풍상가~진양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2-127	중로 2-127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19m~26.5m) • 삼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결정 (폭4.0~15.0m)	• 다시세운광장(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삼풍상가~진양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 도로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높이는 해수면 기준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126 ①	집산 도로	종로3가 32-3일대 (세운상가서 측)	면적(㎡)	5,193.4	-	5,193.4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세운상가가동 ~ 대림상가 (서고2017-198)
				길이(m)	295.1	-	295.1		
				폭(m)	12.9~14.5	-	12.9~14.5		
				높이(m)	23.0~31.35	-	23.0~31.35		
기정	2-127 ②	집산 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세운상가동 측)	면적(㎡)	5,257.3	-	5,257.3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세운상가가동 ~ 대림상가 (서고2017-198)
				길이(m)	296.5	-	296.5		
				폭(m)	12.9~14.5	-	12.9~14.5		
				높이(m)	22.7~31.15	-	22.7~31.1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126 ③	집산 도로	종로3가 32-3일대 (삼풍상가서 측)	면적(㎡)	-	증)8,116.7	8,116.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삼풍상가~ 진양상가
				길이(m)	-	증)512.6	512.6		
				폭(m)	-	증)15.0~19.0	15.0~19.0		
				높이(m)	-	증)23.4~33.7	23.4~33.7		
신설	2-127 ④	집산 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삼풍상가동 측)	면적(㎡)	-	증)7,995.1	7,995.1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삼풍상가~ 진양상가
				길이(m)	-	증)504.5	504.5		
				폭(m)	-	증)15.0~18.0	15.0~18.0		
				높이(m)	-	증)23.4~33.2	23.4~33.2		
신설	3- ⑤	집산도로	종로3가 (세운상가 남측)	면적(㎡)	-	증)517.4	517.4	서울시고시 제130호 (03.5.26)	청계천 북측 도로
				길이(m)	-	증)15.8~17.0	15.8~17.0		
				폭(m)	-	증)15.2~16.6	15.2~16.6		
				높이(m)	-	증)23.16~31.35	23.16~31.35		
신설	3- ⑥	집산도로	종로3가 (청계상가 북측)	면적(㎡)	-	증)502.3	502.3	서울시고시 제130호 (03.5.26)	청계천 남측 도로
				길이(m)	-	증)15.5~17.7	15.5~17.7		
				폭(m)	-	증)15.0~15.5	15.0~15.5		
				높이(m)	-	증)23.16~31.35	23.16~31.35		
신설	2-3 ⑦	집산도로	을지로3가 282-8 일대 (을지로 상부)	면적(㎡)	-	증)511.0	511.0	총독부고 제722호 (36.12.26)	대림상가 ~ 삼풍상가 (을지로 상부)
				길이(m)	-	증)29.8~30.3	29.8~30.3		
				폭(m)	-	증)6.0~10.6	6.0~10.6		
				높이(m)	-	증)23.30~35.75	23.30~35.75		
신설	1-29 ⑧	집산도로	인현동2가 120-22일 대 (마른내길 상부)	면적(㎡)	-	증)244.2	244.2	총독부고 제722호 (36.12.26)	호텔PJ ~ 신성상가 (마른내길 상부)
				길이(m)	-	증)18.2~21.7	18.2~21.7		
				폭(m)	-	증)3.7~44.6	3.7~44.6		
				높이(m)	-	증)28.05~39.95	28.05~39.95		
신설	3-3 ⑨	국지도로	인현동2가 142-2일대 (6-3-4구 역 서측)	면적(㎡)	-	증)80.7	80.7	서울시고시 제2014-119 호 (14.3.27)	6-3-4구역 서측
				길이(m)	-	증)12.0	12.0		
				폭(m)	-	증)6.7	6.7		
				높이(m)	-	증)29.5~35.8	29.5~35.8		

■ 도로 입체적결정 (변경) 조서 (높이는 해수면 기준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적(㎡)	-	증) 51.6	51.6	-	세운4구역 (2층)
				길이(m)	-	증) 18.4	18.4		
				폭(m)	-	증) 2.8	2.8		
				높이(m)	-	증) 28.2	28.2		
신설	2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적(㎡)	-	증) 82.2	82.2	-	세운4구역 (7층)
				길이(m)	-	증) 13.0~13.6	13.0~13.6		
				폭(m)	-	증) 6.2	6.2		
				높이(m)	-	증) 49.4	49.4		
신설	3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적(㎡)	-	증) 88.7	88.7	-	세운4구역 (2층)
				길이(m)	-	증) 14.3	14.3		
				폭(m)	-	증) 6.2	6.2		
				높이(m)	-	증) 28.1	28.1		
신설	4	지하도 (연결통로)	을지로4가 4-8일원	면적(㎡)	-	증) 229.5	229.5	-	대림상가 지하연결통로
				길이(m)	-	증) 42.0	42.0		
				폭(m)	-	증) 5.4	5.4		
				높이 (m, 지하)	-	증) 15.6	15.6		
신설	5	지하도 (연결통로)	을지로4가 4-8일원	면적(㎡)	-	증) 106.3	106.3	-	을지로 지하보도~ 대림상가 지하연결통로
				길이(m)	-	증) 19.9	19.9		
				폭(m)	-	증) 5.4	5.4		
				높이 (m, 지하)	-	증) 15.6	15.6		
신설	6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인현동1가 310-68	면적(㎡)	-	증) 96.5	96.5	-	삼풍상가 대크 (3층)
				길이(m)	-	증) 20.1	20.1		
				폭(m)	-	증) 4.8	4.8		
				높이(m)	-	증) 33.0	33.0		
신설	7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	증) 21.8	21.8	-	세운 6-3-3구역 (2층)
				길이(m)	-	증) 3.3	3.3		
				폭(m)	-	증) 6.72	6.72		
				높이(m)	-	증) 33.0	33.0		
기정	8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155.7	-	155.7	서고 제2017- 394호	세운 6-3-1,2구역
				길이(m)	33.9	-	33.9		
				폭(m)	3.0~5.05	-	3.0~5.05		
				높이(m)	25.5~38.0	-	25.5~38.0		
신설	9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2-1번지 일원	면적(㎡)	-	증) 11.9	11.9	-	세운 6-1-8구역 (2층)
				길이(m)	-	증) 3.0	3.0		
				폭(m)	-	증) 4.0	4.0		
				높이(m)	-	증) 34.0	34.0		
신설	10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인현동2가 142-2일대	면적(㎡)	-	증) 42.0	42.0	-	세운 6-3-4구역 (2층)
				길이(m)	-	증) 6.2	6.2		
				폭(m)	-	증) 6.7	6.7		
				높이(m)	-	증) 35.8	35.8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입체적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73.0㎡)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4.1m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지정
2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224.7㎡)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7F) H=50.0m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옥상과 보행네트워 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지 정
3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134.3㎡)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4.1m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지정
4	지하도 (연결통로)	• 대림상가 지하 연결통로 (면적 : 증)229.5㎡)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하(B1F) H=15.6m	• 1972년 지하도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으 로 판명됨에 따라 만남광장, 거점공간 등 세 운재생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적 결정 지정
5	지하도 (연결통로)	• 을지로 지하보도~대림상가 연결통로 (면적 : 증)106.3㎡)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하(B1F) H=15.6m	• 을지로 지하보도와 인접한 대림상가 지하공간 을 직접 연계하여 보행자의 직접유입을 유도 하기 위해 입체적 결정
6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 (면적 : 증)96.5㎡)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3F) H=35.9m	• 삼풍상가 3층 데크는 대림상가 데크 기부채납 문서를 근거로 서울시 소유이므로 향후 데크 신설시 연결성 확보를 위한 폭 4.8m 연결통 로 지정
8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80.8㎡)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3.0m	•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 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 결성 확보를 위해 삼풍상가 동측에서 6-3-3 구역 연결통로 지정
9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33.4㎡)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3F) H=34.0m	•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 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 결성 확보를 위해 삼풍상가 서측에서 6-1-8 구역 연결통로 지정
10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181.3㎡)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5.8m	•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 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 결성 확보를 위해 호텔PJ 동측에서 6-3-4구 역 연결통로 지정

⑥ 철도

■ 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고속철도(5호선)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대	(80)	(1,397)	건교부고시695호 (90.10.19)	세운 4구역
기정	2	철도	고속철도(3호선)	벽제~양재동간	40.7km (310)	(3,479)	건교부고시53호 (80.2.22)	세운 6-2구역
기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건설부고시 제151호(91.3.25)	세운 6-3구역
기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	세운 6-3구역

※()는 지구내 /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철도 입체적결정 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69.7	－	69.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5호선)
				길이(m)	8.6	－	8.6		
				폭(m)	10.0	－	10.0		
				높이(m, 지하)	14.6~30.4	－	14.6~30.4		
세부 사항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9.3㎡, H=24.5m~30.4m － 지하부 : A=69.7㎡ (지상중복 19.3㎡), H=14.6m~24.5m								
	기정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728.5	－	728.5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길이(m)					53.9	－	53.9		
폭(m)					33.1	－	33.1		
높이(m, 지하)					11.5~29.5	－	11.5~29.5		
세부 사항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 A=292.6㎡, H=24.5m~29.5m － 지하부 : A=640.3㎡ (지상중복 204.4㎡), H=11.5m~24.5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2.7㎡, H=15.4m~22.8m								

㉠ 공간시설

㉡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장사동 142	1,303.5	감) 140.2	1,163.3	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16.04.07)	- 녹 지 면적 감소(140.2㎡)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21.5㎡)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옥상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46.9㎡)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45.6㎡)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산림동 190-20	668.1	-	668.1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청계상가 동측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산림동 141-1	1,192.4	-	1,192.4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대림상가 동측
변경	4	녹지	경관 녹지	인현동2가 57-3	2,297.9	-	2,297.9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삼풍상가 동측 지하도와 중복결정(341.5㎡) - 삼풍상가 동측 3층 보행자 전용도로(데크) 중복결정 (66.0㎡) - 세운6-3-3구역 인접 삼풍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47.0㎡) - 호텔PJ동측 보행자전용도로(데크) 중복결정(197.3㎡)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인현동2가 135-48	517.2	-	517.2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신성상가 동측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인현동2가 181-31	757.3	-	757.3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진양상가 동측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충무로4가 112-1	371.0	-	371.0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진양상가 동측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종로4가 32-8도 외	433.8	-	433.8	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16.04.07)	종로4가사거리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 면적감소 - 기정면적 : 1,303.5㎡ - 변경면적 : 1,163.3㎡(감 140.2㎡) - 위치 : 종로4가 32-8도 외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21.5㎡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옥상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46.9㎡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45.6㎡	• 세운4구역 종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차량동선을 종로28길로 진입, 종로로 출입하는 호텔서비스차량 동선만 허용하는 것으로 교통영향 평가 심의 결과 반영 • 세운4구역에서 세운상가의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결되는 보행데크(보행자전용도로)와 경관녹지 중복결정
4	경관녹지	• 삼풍상가 동측 지하도와 중복결정 - 면적 : 341.5㎡ • 삼풍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보행자전용도로)와 중복결정 - 면적 : 66.0㎡ • 세운6-3-3구역 인접 삼풍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47.0㎡ • 호텔PJ 동측 보행데크(보행자전용도로)와 중복결정 - 면적 : 197.3㎡	• 을지로지하보도~삼풍상가 동측 경관녹지와 지하도 출입시설 (지하연결통로) 중복결정 • 세운상가군 입체보행네트워크 (삼풍상가~호텔PJ 구간 신설되는 보행데크와 주변지역 연결) 구축을 위해 경관녹지와 중복결정

④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문화공원 1	공원	문화공원	종로3가 175-4	3,748.3	감)1,990.6	1,757.7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다시세운광장
기정	소공원 1	공원	소공원	입정동 97-4	2,634.1	-	2,634.1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3구역
기정	소공원 2	공원	소공원	산림동 56-5	2,409.6	-	2,409.6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5구역
변경	소공원 3	공원	소공원	예관동 53-4	1,317.7	-	1,317.7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추후 도심휴게공간, 도심 제조산업 스마트 앵커시 설, 주차장 복합화하기 위 한 중복결정 추진 (예시 : 지상층-소공원, 지하층-연구시설, 주차장 등)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공원 1	공원	• 면적감소 - 기정면적 : 3,748.3㎡(감 1,990.6㎡) - 변경면적 : 1,757.7㎡ - 위치 : 종로3가 175-4	• 다시세운광장(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감 1,990.6㎡)

㉔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중학교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13,055.1	-	13,055.1	서울시고시 10호 (79.1.10)	덕수 중학교 (존치)

② 연구시설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구시설	중구 예관동 52-11번지 일원	1,200	-	1,200	서고 제2014-119호 (14.3.27)	추후 도심제조산업 스마트 앵커시 설, 주차장 및 청년주택을 복합화하 기 위한 입체·중복결정 추진 (예시 : 지상층-청년주택, 연구시설 (공공청사), 지하층-연구시설, 주차 장 등)

㉕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청사	중구 예관동 83-10번지 일원	7,600.0	-	7,600.0	서울시고시 106호 (77.3.15)	중구청

㉔ 방재시설

㉑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km)	폭원(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1,2급 (지방2급)	종로구 서린동 148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	-	5.76 -지방1급 1.31km -지방2급 4.45km	19~113 (20~22)		서울시 고시 제2003-423호 (2003.12.26)	하천, 보행자 전용도로 중복결정

※()는 지구내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천	- 중복결정 - 위치 : 종로구 장사동 세운교 일대	청계천 보행교 설치로 인한 보행자전용도로와 중복결정(폭16.7m~17.7m / 면적 521.0㎡)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03.22. ~ 2018.04.05.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사항	처분내용
(유)제이에이치에너지그룹	김정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56,226호(대치동, 대우아이빌명문가)	2017. 11.17.	신고사유(폐업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	과태료 독촉부과 (1,030천원)

4. 법적근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나.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제49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5. 납부방법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04.05.까지

나. 독촉고지서 발급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너지관리팀)

다. 독촉고지서 발급 및 납부방법 세부 문의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1)

6.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주식회사	제130호	2018.3.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95, 4층(서초동, 가향빌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8호
설계업·감리업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2종 (E-3-216)	일오삼엔지니어링 (132-28-30386)	한종수	서울 관악구 서원길 37-4, 나동 102호(신림동, 동방빌리지)	2018.03.14
전문감리업 (S-2-524)	일오삼엔지니어링 (132-28-30386)	한종수	서울 관악구 서원길 37-4, 나동 102호(신림동, 동방빌리지)	2018.03.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0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
2018 -42	(사)대한자전거연맹 (대표 : 구자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소외계층의 자전거 꿈나무 선수를 발굴 육성, 선수 저변확대 및 학교팀 운영 활성화에 기여	250 (현금)	전국	' 18.3.14 ~ ' 18.12.31
						' 18.4.1 ~ ' 18.12.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
2018-43	(사)한국다문화가족 협회 (대표 : 남운성)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8 길 30-9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한국 문화 교육	200 (현금및물품)	전국	' 18.3.20 ~ ' 18.12.31
						' 18.3.20 ~ ' 19.3.31
2018-44	(사)사람숲 (대표 : 양길승)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21-10	- 도심 곳곳에 역사적 콘텐츠를 문화적으로 소개하는 작은 생태 공원 조성확장	1,000 (현금및물품)	전국	' 18.4.1 ~ ' 18.12.31
						' 18.4.1 ~ ' 19.12.31
2018-45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대표 : 김종훈)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 로57길 5	-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및 이주 청소년 등 지원	300 (현금및물품)	전국	' 18.3.14 ~ ' 18.12.31
						' 18.3.14 ~ ' 19.3.1
2016-23-1	(사)좋은벗들 (대표 : 최석호)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독립운동 유적지 재건사업	300 (현금)	전국	' 16.3.8 ~ ' 17.3.7
						' 16.3.8 ~ ' 18.3.7
						' 16.3.8 ~ ' 16.3.8
						' 20.3.7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10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연번	보관일자	채 주	예치사유(적요)	귀속대상금액(원)	비 고
1	2003.4.28.	우성씨앤씨(주)	용산구 원효로4가 113-3 임시급수보증금	488,713	폐전일 : 2012.10.22. (5년이상 경과)
2	2012.2.8.	에스디건설	종로구 송인동 317-21 임시급수보증금	851,040	폐전일 : 2012.11.12. (5년이상 경과)
3	2008.7.28.	왕병한	중구 회현동1가 1-16 임시급수보증금	728,340	폐전일 : 2012.12.3 (5년이상 경과)
4	2007.3.29.	김원선	용산구 한남동 557-26 109호 임시급수보증금	601,397	폐전일 : 2013.1.9. (5년이상 경과)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부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정연민 (☎ 02-3146-20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1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 업체 청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4]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행정처분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의견진술의 기회)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인력), 소재불명, 자료 미제출 등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
4. 법적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5. 청문기간: 2018. 4. 10(화) ~ 4. 11(수)
6. 청문장소: 재생협력과 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11층)
7. 청문주재자: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담당 주무관
이용수(2133-7197)

8. 진 술 자: 법인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9. 진술내용: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
 10.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기타 소명자료
 11. 등록취소 해당 청문대상 업체

번호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사 유	적용법규
1	2013-03	두현이앤지(주)	이기업	송파구 총민로 66, Y5111	등록취소	- 서류 일체 미제출 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최근 3년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합산12개월 초과	「도정법」 제10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 조 [별표5] 2.개별기준 나목, 바목 및 아목

12.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1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 ☎2133-71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통지서**
 [V] 대리인선임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14호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안)

서울시에서는 현 시금고와의 약정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금고의 수 : 복수금고(2개) 지정

- 제1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 제2금고 : 기금

※ 단,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은행으로 지정함.

2.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흥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19. 1. 1. ~ 2022. 12. 31.(4년)
5.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제2금고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1금고와 제2금고 중복 신청 가능

6. 신청절차

- (1)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 3. 30.(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2)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18. 4. 2.(월) ~ 2018. 4. 24.(화)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사무실(☎ 2133-3228)
- (3)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25.(수) ~ 2018. 4.30(월)
 -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
- 제출서류 : 시금고지정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등기부등본, 기타 서울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제출서류 밀봉)
 - ※ 제1금고와 제2금고 중복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안서 별도 제출
- 제출부수 : 각 서류 당 14부(원본 1, 사본 13)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 시 서민금융 지원 실적 평가	9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8. 심사방법

- 제1금고, 제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개별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선정.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9.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19.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시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서울시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서울시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 2133-322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2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이명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일시 : 2018-01-18 14:22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전남91바7849(카고)차량 폭 0.16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2.26.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4.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22호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I. 열람 기간: 2018. 3. 23. ~ 2018. 4. 5.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02-2133-4932)
- I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증)1,900.2	1,900.2	-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00.2	-	1,900.2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0.2	감)1,900.2	-	-	-
준주거지역	-	증)1,900.2	1,900.2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면적(㎡)	획 지		계획내용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1,900.2	장안동 459-1 대	1,036.4	획지계획	2개 필지(459-1, 459-6)를 통합하여 합필 단독개발을 위한 1개 획지로 계획함
		장안동 459-6 대	863.8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획지계획 1,900.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필지 459-1번지와 459-6번지의 2개 필지를 통합하여 합필단독개발을 위한 1개 획지로 계획함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지정용도

구분	도면표시	지정용도	비고
지정용도	(A)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2)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불허용도(전층)	불허용도(1층)	비고
불허용도	(a)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 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 -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제외)	단독 및 공동주택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공람용) 불허용도 전수 반영

■ 결정사유서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불허용도 신설	건전하고 안락한 환경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①	동대문구 장안동 459-1, 459-6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주1) : 법정용적률 이하	-
		높 이	• 최고높이 40m 이하	-
		건축선	• 이면부 건축한계선 1m	-

주1)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물 밀도계획 신설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400% 이하 - 높이 : 40m 이하 - 건축한계선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건축물 밀도계획 신설 -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공람용)에 따른 건축한계선 기준 준용

다.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사업조건 항목		계획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 부지면적의 10% 이상	기본 용적률 4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15%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비율	• 제한없음		
	공공임대 : 민간임대	• 10 : 90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 건축물,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 시설은 지하2층~지상1층에 국한하여 설치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839	2018.01.03	주식회사 트랜시아 임영식 110111-4650853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12,302호(성산동, 도원빌딩)
2	202840	2018.01.03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앤피 박인수 131111-0142114	서울 중구 충무로 50-7, 301호(을지로3가)
3	202841	2018.01.26	주식회사 큐디스 김성진 110111-336768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404, 405, 406호(가산동)
4	202842	2018.01.26	주식회사 위너스 이정웅 110111-4512186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0, 401호(가락동, 국토빌딩)
5	202843	2018.01.29	주식회사 네트컴정보통신 김진수 110111-6555895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19층 제에이1903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6	202844	2018.01.29	케이디디아이코리아 주식회사 이성진 110111-15.49.041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4층 401호(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7	202845	2018.01.29	주식회사 이에스정보시스템 정홍렬 110111-484343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704호(가산동, 아이티프리미어타워)
8	202846	2018.01.29	주식회사 미래엘케이시스템 김영림 110111-4912112	서울 송파구 동남로18길 40, 제지하층 제16호(가락동, 프라자아파트상가)
9	202847	2018.02.06	한국버스방송 주식회사 채광석 110111-1822992	서울 강남구 논현로105길 5, 2층(역삼동, 라루체빌딩)
10	202848	2018.02.07	에이블이엔씨 주식회사 김주형 110111-66131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31, (양평동2가)
11	202849	2018.02.13	주식회사 투씨에스지 임천수 110111-383065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7층(여의도동)
12	202850	2018.02.13	주식회사 시큐레이어 전주호 110111-4785915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0길 14, 1202호(성수동2가, 에이스하이엔드성수타워)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3	202851	2018.02.13	주식회사 우진지앤에스 정안수 110111-6565547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304호 (문정동,문정역테라타워)
14	202852	2018.02.13	구루멘토링 주식회사 최동양 110111-5584027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325호(독산동, 현대지식 산업센터)
15	202853	2018.02.21	주식회사 유씨큐넷 김경 110111-4771956	서울 구로구 경인로 557, 507호 (구로동 삼영빌딩)
16	202854	2018.02.21	구네보코리아 주식회사 손정만 110111-286307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206호,207호 (구로동,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17	202855	2018.03.02	인강오디오 주식회사 김성수 110111-3875783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문정동)
18	202856	2018.03.06	주식회사 마커스코리아 이현철 110111-230935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905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3차)
19	202857	2018.03.06	주식회사 창조씨앤에스 김학재 110111-3489906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47(북가좌동)
20	202858	2018.03.06	주식회사 다온텍 김효범 110111-608425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412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6차)
21	202859	2018.03.06	주식회사 하성씨앤아이 윤철한 110111-137054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322호 (문정동)
22	202860	2018.03.08	주식회사 오션씨앤씨 신혜영 134111-0163563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515호(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지9)
23	202861	2018.03.13	주식회사 우현티앤씨 김은주 110111-323431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7길 18, 2층(서초동,우현 빌딩)
24	202862	2018.03.09	이노넷 주식회사 유호상 131111-0274256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417호, 418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5	202863	2018.03.12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 이상연 110111-6605765	서울 강서구 하늘길 70(과해동)
26	202864	2018.03.15	비비엠씨 주식회사 김성진 110111-2861791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33, 302호(서초 동,씨엠씨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
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25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2018.02.05.	201615	주영전자통신 주식회사 임채열 110111-6607761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11가길 48(공항동)	법인 전환
2	2018.02.13.	200234	주식회사 비티엘 정보통신 최성진 110111-601.36.9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4, 903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3차)	법인 합병
3	2018.03.06	111376	주식회사 대신네트웍스 신종교 110111-6629137	서울 송파구 동남로24길 7, 4층 (오금동, 덕수빌딩)	분할 합병
4	2018.03.08	112186	주식회사 슈퍼텔 김창호 110111-66.208.12	서울 도봉구 방학로130, 2층(방학동)	분할 합병
5	2018.03.09	510422	주식회사 세화넷 박경식 110111-6522589	서울 용산구 원효로81길 5(원효로1가)	분할 합병
6	2018.03.13	112422	태지종합건설(주) 박소연 110111-2626947	서울 마포구 독막로8길 7(합정동)	분할 합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50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수립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수립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장

1. 일 시 : 2018. 4. 10(화) 14:00 ~ 16:30
2.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3. 주요내용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관련 주제발표
 -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4. 발표자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관련 전문가
5. 의견제출 안내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당일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전자문서(johap@seoul.go.kr), 우편(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 고 시

◆ 노원구고시 제2018 - 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1974.05.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17-43호(2017.4.20)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노원구고시 제2018-171호(2018.2.22)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한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연장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따라 시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 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노원구 상계동1036-1~1037-1간(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명칭 : 상계동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 : 당초 : B=10m, L=140m

변경 : B=10m, L=152m

마.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701-1)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12.31.까지(변경없음)

사. 변경사항 : 사업구간 연장 12m 증가(L= 140m → 152m)

자.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2116-4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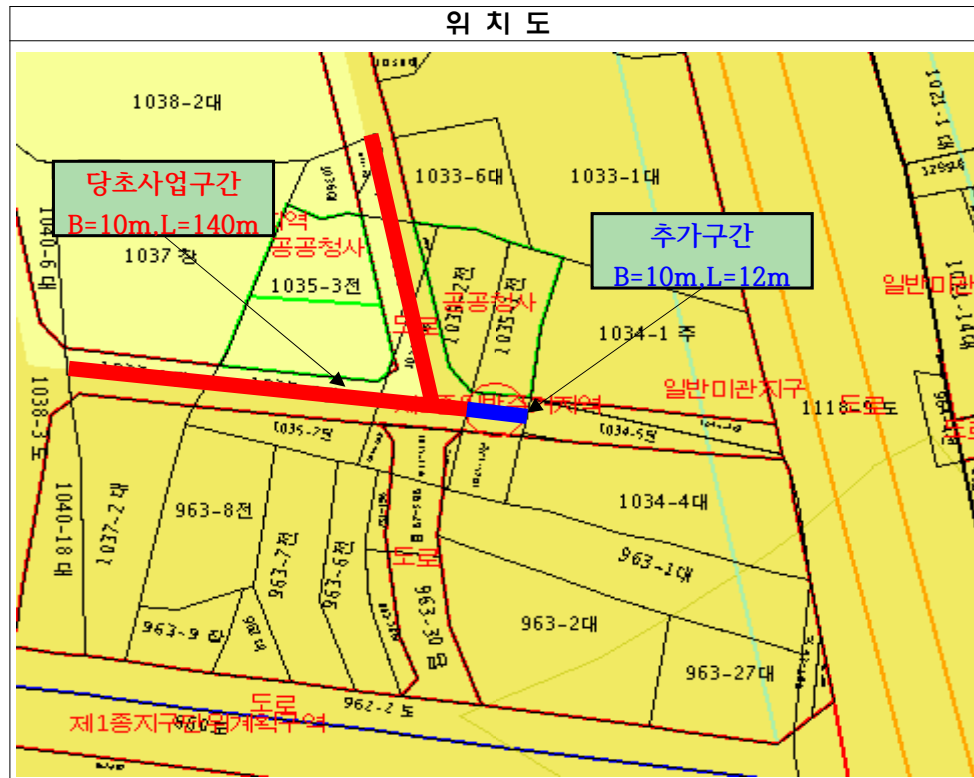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1036-1	묘	48	48		성명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22-2				변경없음
						성삼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 구로우성아파트 2동 702호				
2	노원구 상계동 1035-4	전	212	212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4동 2201호				소유자 주소정정
3	노원구 상계동 1035-8	전	367	367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4동 2201호				“
4	노원구 상계동 1035-6	전	347	347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4동 2201호				“
5	노원구 상계동 1037-1	전	269	269		김인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691-3				변경없음
6	노원구 상계동 1035-11	전	101	101		홍경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04동 2201호				추가

물 건 조 서

사업명 : 상계동 1036-1~1037-1번지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1039-1	컨테이너		7㎡		오치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36 털보네세차장				변경없음
2	노원구 상계동 1035-4	주차공간	파이프조	17㎡		김남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35-8호 영남자원				“
3	노원구 상계동 1035-4	계근대		1식							
4	노원구 상계동 1035-4	컨테이너 시설		15㎡		임경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소백자원				“
5	노원구 상계동 1035-4	계근대		1식							
6	노원구 상계동 1035-8	컨테이너시설	철제구조	8㎡		유재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한덕자원				“
7	노원구 상계동 1035-8	간판		1식							
8	노원구 상계동 1035-6	웬스	철제구조	67.8㎡		이만복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준희자원				“
9	노원구 상계동 1035-6	계근대		1식							
10	노원구 상계동 1035-8	웬스	철제구조	70.8㎡							



◆ 관악구고시 제2018-1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관악산 대학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8-133호(2018.02.01.)로 열람공고한 ‘관악산 대학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26-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 대학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26-8번지
- 2) 면 적 : 7,90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실제 이용사항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림동 산26-8	임야	7,900	7,900	임야	이**	단독 지분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	광주 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근저 당권	
									서울 특별시		지상권	
											구분 지상권	

◆ 강동구고시 제2018-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34호(2011.11.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공고 제 2018-331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02-2번지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02-2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토지보상 1,781㎡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필지		1,781	1,781							
					최신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57동 2402호 (잠실동, 리센츠아파트)	2415/ 483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산102-2	임야	1,781	1,781	주명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34, 202동104호(인정하이츠)	1207.5/ 4830				
					김미례	23600 Kentworthy Ave Harbor City, Ca 90710	1207.5/ 4830				

◆ 강동구고시 제2018-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261호(2007.8.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강동구공고 제 2018-336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6번지 외 8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일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토지보상 17,344㎡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9필지		67,561	17,344							
1	산66	임야	3,895	1,800	김송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5길 70(고덕동)					
2	산67	임야	4,882	1,800	이우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64길 20-2(자양동)	1/2	정영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갯로27번길 20-1, 103동 203호(대원빌리지)	근저당권	
								정병주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30(연희동)	근저당권	
								국(성동 세우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송정동)	압류(재산세2과 -타1798)	
					이연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27길 15, 201호(길동, 일호홈타운)	3/14				
					이정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903동 202호(죽전동, 내대지마을건영캐스빌)	2/14				
3	산50	임야	1,384	1,384	임응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4/23				
					임경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178-81	2/23				
					임우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39-173, 덕진주택 7동 101호	4/23				
					임송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10, 2205호(진관동, 아이파크포레스트게이트)	6/23				
					임경자	서울특별시 장충동1가 50-24	1/23				
					윤원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3길 16-10(이도일동)	1.2/23				
4	산51	임야	5,633	1,600	임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길 7(대치동)	1.8/23				
					임은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9, 104동 908호(풍덕천동, 삼익아파트)	1.2/23				
					전부영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56, 502동 702호(토평동, 상록아파트)	1653/6446				
					채현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75, 901동 1202호(호계동, 목련아파트)	661/6446				
					지재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39, 112동 201호(구미동, 화이트빌)	1157/6446				
					곽동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4길 3(구의동)	661/6446				
					최재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5번길 16, 201동 602호(양수리 아이파크)	2314/19338				
					최명규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91, 107동 801호(수송동, 수송아파트)	2314/19338				
					최태규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81, 101동 802호(황지동, 이원 예채1차 아파트)	2314/19338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산58	임야	27,294	3,300	박인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래미안강동팰리스, 103동 2801호					
6	산19	임야	2,276	920	조선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33, 103동 2404호(하왕십리동, 텐즈힐)					
7	산61	임야	12,080	880	동기정씨 풍산군파 종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72(호평동)					
8	산20-1	임야	5,217	760	유근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5길 60, 101동 505호(성내동, 하나플러스투)	3300/6607	서울 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25(성내동)	압류 (세무1과- 19494)	
					여성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대로 71(풍납동)	1323/6607	유병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4길 18, 1304호(성내동, 선광아파트)	근저당권	
					최금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6-1(제기동)	1984/6607				
9	산37	임야	4,900	4,900	이선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101동 1506호(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993.33/5950				
					알렉산더 훈강	미합중국 7800 케논 크로버 드라이브 베커스필드 캘리포니아 93313	990/5950				
					전광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A동 1203호(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793.33/5950				
					이승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11-8(수택동)	1190/5950				
					김상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길 12-8(보문동1가)	661.09/5950				
					김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101동 1001호(정릉동, 정릉푸르지오아파트)	661.09/5950				
					김태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5, 1504호(서초동, 서초동두산위브)	661.16/5950				

◆ 강동구고시 제2018-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공고 제2018-373호(2018.3.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7번지 외 2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암사역사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토지보상 4,822㎡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9.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3필지		9,351	4,822							
1	197	전	5,474	2,500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2	135	전	2,885	1,330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662 /28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662 /2885	강동농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근저당권	
3	137-9	전	992	992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5/9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69, 106동 1601호(퇴계동, 퇴계이안아파트)	2/9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지상권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2/9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지상권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	135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4	m²	농업용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 파트)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4	m²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0	m²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0	m²							
		담장	쇠파이프 37.4×H1.8	1	개							
		이동식화장실	1인용 (1.8m×H2.5m)	1	개							
		관정	깊이 30m, 지름 50mm, 동력 0.33HP	1	개							
		지하수시설		1	식							
		전기시설		1	식							
		단풍나무	R21×H3	1	주	농업용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 파트)				
		오가피나무	R1.0×H1.5	2,000	주							
		오가피나무	R1.0×H2	1,000	주							
		덩굴장미	R1.0×H1.7	20	주							
		찔레나무	R1.0×H1.7	5	주							
		배나무	R7×H2	1	주							
		배나무	R9×H3	2	주							
		대추나무	R8×H2	2	주							
		복숭아나무	R10×H2.3	1	주							
		복숭아나무	R15×H2.5	2	주							
		복숭아나무	R23×H3	1	주							

2	137-9	모과나무	15년생 R30×H4	1	주							
		오죽새순		15	개							
		은행나무	50년생 R50×H12	1	주							
		농막	쇠파이프, 비닐, 천막 (4m×1.8m)	7.2	m²	농업용	황선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 로28가길 83, 401호(장안 동, SM이로빌아파트)				
		농막내부 비품		1	식							
		파라솔테이블		1	개							
		빨래대	쇠파이프, 줄 (H1.8m)	1	개	농업용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관정	깊이 50m, 지름 25mm, 동력장치 1HP	1	개							
		지하수시설		1	식							
		뒷문	철재 3.3m×1.5m	1	개							
		전기시설		1	식							
		뽕나무	H4.2×R17	1	주							
		대추나무	H3×R20	1	주							
		개집	철재, 파라솔	9.2	m²	농업용	김민경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39, 107동 801호(덕풍동, 한솔리치빌아파트 1단지)				
		두릅나무	H2.5×R4	3	주							
		두릅나무	H1.1×R2	22	주							
		오가피나무	H1.5×R1	6	주							
		덩굴장미	H2.5×R1	1	주							
		철쭉	H0.6×R1.5	3	주							
		편백나무 (화분)	H0.7×w0.8	8	주							
		등나무	H=2.2,R=1	3	주							
		무명나무	H=3, R=3.5	1	주							
		음료자판기		1	개							
		CCTV카메라		2	개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8-299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호(2012. 2. 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태원동 127-7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8. 3. 21. ~ 2018. 4. 4.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24)

다.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대상	기정	변경	비고
이태원동 127-7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구 신설 · 공동주차출입구 일부 폐지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성동구공고 제2018-246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53)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6	3	국지도로	32	소로2-2 (도선동80)	소로3-7 (도선동93)	보행자 전용 도로	-	총고 22호 (1939.1.19.)	왕십리광역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 폐지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용역 단차가 크고 우회로가 있어 도로개설 실효성이 떨어짐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진구공고 제2018-306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호(2018.01.11.)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청소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광진구청장

■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8-6 외12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다. 사업의 명칭: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 라. 사업의 면적: 6,890㎡→ 7,102㎡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 마. 사업시행자: 광진구청장(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고시일로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자.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차. 열람장소: 광진구청 청소과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450-76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광진구 광장동	303-5	대	2,361	6		광진구					
2	광진구 광장동	303-12	전	1,080	544		광진구					
3	광진구 광장동	311	전	3,279	859		광진구					
4	광진구 광장동	313-3	대	4,679	47		광진구					
5	광진구 광장동	550-9	구	3,708	801		광진구					
6	광진구 광장동	318-6	답	2,221	1,984		서울 특별시					
7	광진구 광장동	318-26	대	3,635	64		서울 특별시					
8	광진구 광장동	318-23	대	139	112		광진구					
9	광진구 광장동	318-8	답	620	620		서울 특별시					
10	광진구 광장동	318-5	답	974	782		서울 특별시					
11	광진구 광장동	319-16	유	2,680	158		서울 특별시					
12	광진구 광장동	319-17	전	267	209		서울 특별시					
13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1,380	916		서울 특별시					
총 계				27,023	7,102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광진구 광장동	311	전			가로등	철재	1.0	EA						
2	광진구 광장동	318-5	답			천막		10.5	㎡						
3	광진구 광장동	318-6	답			안내표지	목재	1.0	EA						
4	광진구 광장동	318-9	답			천막		30.5	㎡						
5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컨테이너	철재	18.0	㎡						
6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컨테이너	철재	28.6	㎡						
7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스레트	철재	11.8	㎡						
8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컨테이너	철재	18.4	㎡						
9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컨테이너	철재	19.0	㎡						
10	광진구 광장동	319-7	전			컨테이너	철재	19.0	㎡						
11	광진구 광장동	319-16	유			컨테이너	철재	27.0	㎡						
12	광진구 광장동	550-9	구			컨테이너	철재	11.3	㎡						
13	광진구 광장동	550-9	구			안내표지	목재	1.0	EA						

◆ **중랑구 공고 제2018-2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1974.0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18-13호(2018.03.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84-6 ~184-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상봉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폭 3→6m, 연장 3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3)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상봉초등학교앞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84-1	대	185.0	4.0	권원혁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84-1				
2	중화동	184-2	대	155.0	6.0	백주현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24길 54(중화동)				
3	중화동	184-6	대	25.0	25.0	이재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39, 703호(불당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구분지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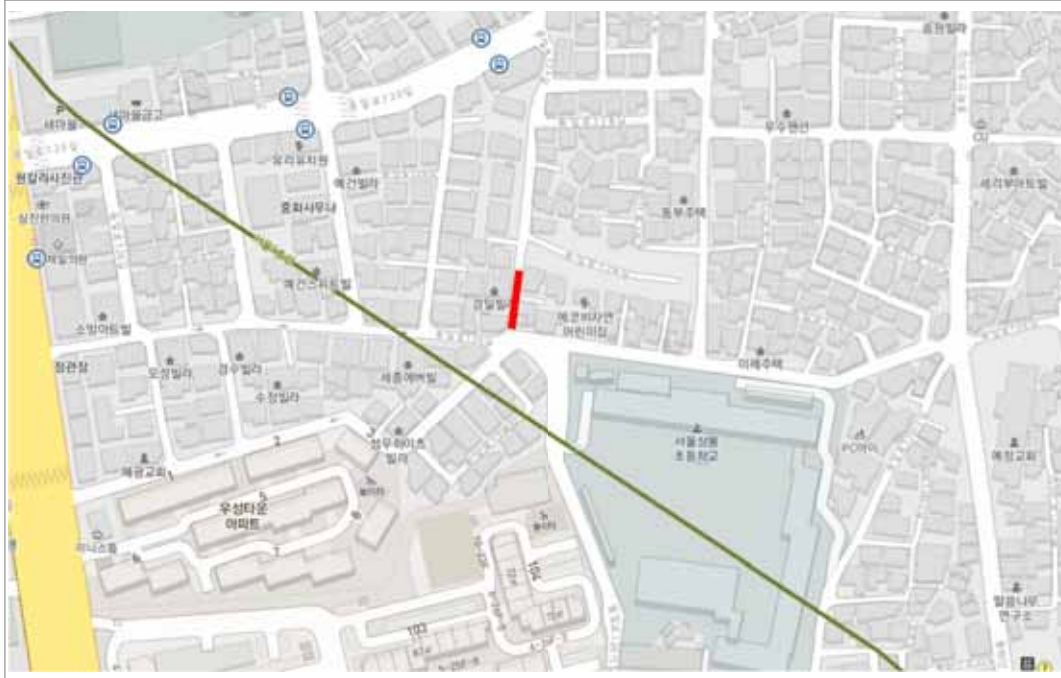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상봉초등학교앞 도로확장 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84-6	건물	연와조 세멘외죽	32	이재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길 39, 703호(불당동)	수산업협동조 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홍대역지점)	근저당권	

□ 위 치 도



□ 현황사진



◆ 강서구공고 제2018-39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42호(2017.9.28.)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1382호(2017.10.26.)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1417호(2017.11.2.)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7-113호(2017.11.23)로 도시계획시설(강서문예회관) 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 물건조서 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9-68번지 외 5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 1,246.2㎡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 4,739.4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9.12.31.(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물건조서 변경)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02-2600-6071)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문화체육과(☎02-2600-6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1~6	변경 없음										

[물건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이름	주 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1~2	변경 없음										
3	당초	화곡동 379-69, 70	근생	78	철근콘크리트 , 연와조	박정애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7(화곡동)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증권타운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생	113.9							
			주차장	54							
			근생	165							
			근생	153.42							
			주택	80.1							
	옥탑		22.68								
	추가		가추	48	사각파이프조 ,선라이트 등			근저당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강서지점)	서울신용보 증재단	
			창고	1식	판넬조						
			발코니확 장	20	샷시조						
			발코니확 장	20	조적조 등						
가추		20	철파이프조 선라이트덮개								
4	당초	화곡동 379-71	근린생활 시설	163.65	철근콘크 리트조	장희종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119동 1004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없음			
				141.19							
				17.98							
				170.91							
				27.5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	구조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이의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이름	주 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5				17.98							
				225							
				195							
				30							
				225							
				225							
			옥탑	27.98							
	추가		창고 등	20	조적조+ 샷시스라브 지붕						
			바닥	140	콘크리트						
	당초	화곡동 379-72	근생	60.47	철근콘크리트 , 연외조	권태희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0,409호 (충정로3가, 충정아파트)	근저당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76,913동2201호 (청계동,시범우남 퍼스트빌아파트)	임왕수	
			근생	65.33							
			다가구	65.33							
			다가구	65.33							
			옥탑	21.6							
	추가		창고	9	샷시조						
			가추	2	파이프조천막 지붕						
			주택	12	조적조 등						
			담장	25	H1xL24						

[영업권조서](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강서문예회관 건립공사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이름	주 소	
1~2	변경 없음							

◆ 강서구공고 제2018-39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호(2002.2.10.)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에 대하여 민간개발 활성화 유도 및 지구중심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강 서 구 청 장

① 열람기간 : 2018. 3. 22. ~ 4. 5.(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②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844)

③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8,571.0	증) 476.1	69,047.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19.2	감) 476.1	843.1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종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 일원	121,419.4	증) 2,205.5	123,624.9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④ 열람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8 - 484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 2005-91호(2005.11.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60-27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60-27 등 9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적 : 7,046㎡
 - 나) 내용 : 토지보상
 - ※ 변경사항 : 필지 분할에 따른 소재지 지번 및 지적면적 변경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47,292	7,046						
1	서초동 산160-27	임야	16,328	22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14,936/16,328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9, ***동 ***호(반포동, 반포아파트)	김신*	94.38/16,328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8길 9, ***호(신림동)	최정*	99.09/16,32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동 ****호(망월동, 미사강변도시12단지)	김윤*	28.53/16,328	김용*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72, 반포아파트 **동 ***호	가처분
2	방배동 산23-38	임야	1,029	1,02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5길 ***(홍제동)	박재*	1/4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5길 99, ***동 ****호(동소문동7가, 한신휴아파트)	현옥*	1/4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세*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125, ****동 ****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노성*	1/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10, ***동 ****호(불당동, 불당리더힐스)	최영*	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1, ***동 ***호(신방동, 천안신방푸르지오)	김혜*	1/1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동 1311호(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박성*	1/16			
3	반포동 산85-2	임야	21,915	1,900	용인시 성북동 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동 ***호	김귀*	7,968/22,84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지상권 설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	이혜*	3,306/22,845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0, **동 ***호(서초동, 삼풍아파트)	박윤*	1,653/22,845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25, ****동 ****호(풍납동, 현대아파트)	이성*	1,653/22,84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42길25, ***호(청담동, 청담아이파크)	이제*	1,653/22,84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270, ***동 ***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이호*	1,653/22,845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9길58, **동 ***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제*	1,653/22,845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01, **동 ***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백경*	1,653/22,845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01, **동 ***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백성*	1,653/22,845			
4	반포동 산85-11	임야	1,335	1,335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레스트시 스톤에비뉴에스트 **	이동*	1,335/1,335			
5	반포동 산85-48	임야	145	145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레스트시 스톤에비뉴에스트 **	이동*	145/145			
6	반포동 산89	임야	1,980	1,98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402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남윤*	1,980/1,980			
7	반포동 산89-4	임야	184	184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76동 402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남윤*	184/1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8	방배동 산23-34	임야	3,906	3,906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11, ***호(마장동, 마장동해맑은아파트)	안영*	132.6/5,966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259번길 ***호(덕풍동)	손성*	132.6/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동 ****호(석수동,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최승*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1길 ***호(봉천동)	신철*	132.6/5,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동 ***호(매탄동, 동남아파트)	이낙*	132.6/5,9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69, ****동 ***호(일산동, 후곡마을)	윤삼*	132.6/5,966			
					서울 강동구 상암로11, ***동 ****호(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종*	132.6/5,96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 (우이동)	고종*	132.6/5,966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31, *동 ****호(상봉동, 상봉 듀로트리스)	이공*	132.6/5,96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1, ***동 ****호 (장현동, 청구아파트)	황선*	132.6/5,96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동 ****호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	이*	132.6/5,9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5, *동 ****호(오금동, 상아아파트)	김희*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호	최화*	132.5/5,96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동 ****호 (용현동, 건영아파트)	권혁*	132.5/5,96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80, ****호 (만촌동, 담터힐즈)	정한*	132.5/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65-13, ***동 ***호 (암사동, 암사e-편한세상)	연중*	169.4/5,966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95-6, ***호 (후평동)	박동*	169.4/5,966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동 ***호 (중동, 미리내마을)	민경*	169.4/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 ***동 ****호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최중*	169.4/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24, ***동 ***호 (분당동, 장안타운)	이용*	169.4/5,9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동 ****호 (잠실동, 리센츠)	이재*	169.4/5,9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81번길 **	김차*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5-1, ***호 (안양동)	권명*	191.5/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동 ***호(아탑동, 장미마을)	김원*	191.5/5,966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동 ***호(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백규*	132.6/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고태*	132.6/5,9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27, ***동 ***호(신길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성금*	191.5/5,966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박노*	169.4/5,966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28, ***동 ***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이철*	132.6/5,966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동 ***호(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남영*	132.6/5,966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36, ***동 ***호(신곡동, 삼익아파트)	양철*	132.5/5,966			
					경기도 의왕시 새롭길 21, ***동 ****호(포일동, 인덕원대우아파트 푸른마을)	이목*	191.5/5,966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동 ****호(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한상*	169.4/11,932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호(암사동, 강동훼미리)	김태*	169.4/11,9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동 ***호(신길동,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이순*	191.5/5,966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20번길 27, *층동 ***호(보아주택)	윤원*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42, * 동 ***호(관양동, 대화아파트)	김명*	169.4/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김철*	191.5/5,966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2, ***동 ***호(문정동, 건영아파트)	이선*	663/29,83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동 ****호(서초동, 삼풍아파트)	이지*	169.4/5,96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9	방배동 산23-39	임야	328	328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11, ***호(마장동, 마장동해맑은아파트)	안영*	132.6/5,966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259번길 ***호(덕풍동)	손성*	132.6/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동 ****호(석수동, 석수e편한세상아파트)	최승*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1길 ***호(봉천동)	신철*	132.6/5,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동 ***호(매탄동, 동남아파트)	이낙*	132.6/5,9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69, *****호(일산동, 후곡마을)	윤상*	132.6/5,966			
					서울 강동구 상암로11, ***동 ****호(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전중*	132.6/5,96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 (우이동)	고종*	132.6/5,966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31, *동 ****호(상봉동, 상봉 듀로트리스)	이공*	132.6/5,96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71, ***동 ****호 (장현동, 청구아파트)	황선*	132.6/5,96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6-83 *동 ****호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	이*	132.6/5,966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5, *동 ****호(오금동, 상아아파트)	김희*	132.6/5,96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최화*	132.5/5,966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번길 50, ***동 ****호 (용현동, 건영아파트)	권혁*	132.5/5,96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80, ****호 (만촌동, 담터힐즈)	정환*	132.5/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65-13, ***동 ***호 (암사동, 암사e-편한세상)	연중*	169.4/5,966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95-6, ***호 (후평동)	박동*	169.4/5,966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동 ***호 (중동, 미리내마을)	민경*	169.4/5,966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51, ****동 ****호 (명일동, 고덕주공아파트)	최중*	169.4/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263번길 24, ***동 ***호 (분당동, 장안타운)	이용*	169.4/5,96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동 ****호 (잠실동, 리센츠)	이재*	169.4/5,96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81번길 **	김자*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45-1, ***호 (안양동)	권명*	191.5/5,9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동 ***호(아탑동, 장미마을)	김원*	191.5/5,966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동 ***호(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백규*	132.6/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고태*	132.6/5,96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27, ***동 ***호(신길동, 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성금*	191.5/5,966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박노*	169.4/5,966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28, ***동 ***호(도화동, 마포삼성아파트)	이철*	132.6/5,966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동 ***호(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남영*	132.6/5,966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36, ***동 ***호(신곡동, 삼익아파트)	양철*	132.5/5,966			
					경기도 의왕시 세류길 21, ***동 ****호(포일동, 인덕원대우아파트 푸른마을)	이옥*	191.5/5,966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동 ****호(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한상*	169.4/11,932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호(암사동, 강동웨미리)	김태*	169.4/11,9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동 ***호(신길동,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이순*	191.5/5,966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20번길 27, *층동 ***호(보아주택)	윤원*	169.4/5,9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42, * 동 ***호(관양동, 대화아파트)	김명*	169.4/5,966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동 ****호(시흥동, 벽산아파트)	김철*	191.5/5,966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8길 12, ***동 ***호(문정동, 건영아파트)	이선*	663/29,83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동 ****호(서초동, 삼풍아파트)	이지*	169.4/5,966			

◆ 서초구공고 제2018-492호

방배지구중심(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방배지구중심(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방배지구중심(내방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874-5번지 일원	-	증) 212,856.4	212,856.4	-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안)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안)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특별계획구역 1	방배동 874-8번지 일대	888.8	-
신설	특별계획구역 2	방배동 874-2번지 일대	4,127.7	-
신설	특별계획구역 3	방배동 898-3번지 일대	2,997.9	-
신설	특별계획구역 4	방배동 936-12번지 일대	2,865.6	-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	방배동 852-22번지 일대	7,484.1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2	방배동 874-1번지 일대	3,295.0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3	방배동 875-1번지 일대	3,218.3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4	방배동 851-5번지 일대	7,414.5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5	방배동 876-19번지 일대	2,670.3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6	방배동 897-1번지 일대	6,150.2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7	방배동 901-1번지 일대	1,908.5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8	방배동 936-10번지 일대	2,630.2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9	방배동 332-7번지 일대	2,893.3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0	방배동 332-1번지 일대	4,727.7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1	방배동 937-1번지 일대	3,468.6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12	방배동 872-11번지 일대	5,076.4	-

5) 가구 및 획지 규모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6) 건축물 등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등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92), 방배1동주민센터(☎2155-7743), 방배2동주민센터(☎2155-7789), 방배4동주민센터(☎2155-7832)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마. 기타사항 : 결정조서 내용(용적률, 건축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서초구공고 제2018-503호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 8. 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325호(2002. 8.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1번지 일대의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공 원 명 :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1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구분		시설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기 간 시 설	도로	35,094㎡	35.670㎡	증)576㎡	
	녹지연결로	0㎡	289㎡	증)289㎡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공원녹지과(양재주차빌딩)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원녹지과 (☎ 02-2155-6861)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18-505호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 2008-63호(2008.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번지 일대의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초 구 청 장

1. 공 원 명 : 말죽거리 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산57-1번지 일원
3. 공원조성계획변경(안)

구분		시설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기반 시설	도로(산책로)	8,555㎡	8,775㎡	증)220㎡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5층 공원녹지과(양재주차빌딩)
7. 안내사항 :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원녹지과 (☎ 02-2155-6861)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4,905	220							
1	양재동 산57-1	임야	4,905	2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4 1층(양재동, 옥천빌딩)	주식회사 호주건설		케이비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수탁자	

◆ **동작구공고 제2018-3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8-1 등 2필지
- 내 용 : 토지보상
- 면 적 : 2,248㎡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3,726	2,248							
1	동작동 산28-1	임야	1,208	1,208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3길51-3, 201호(명일동)	천귀분	13967/21058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110동 1602호 (둔촌동, 둔촌푸르지오아파트)	안제영	7091/21058				
2	동작동 산16-1 2	임야	2,518	1,040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3 (본동래미안트윈파크)101동 1604호	고현식					

◆ **동작구공고 제2018-336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일원	-	증)6,434	6,434	

※ 결정사유 : 보라매공원역(신림정전철 105정거장) 250m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생략 :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6,434.0	—	6,43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3.0	증) 92.0	245.0	3.8	
	제3종일반주거지역	6,281.0	감) 6,187.1	93.9	1.5	
	준주거지역	—	증) 6,051.1	6,051.1	94.7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초등학교	동작구 신대방동 488-1	7,299	증)92	7,391	서고 제2000-179호 (2000.07.03.)	

3) 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및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195)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매일종합건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14번길 17	서울시계내 한강 (두모교)	선박 2척 (기선1,부선1)	두모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 18.03.19.~ ' 18.03.21.	' 18. 03.14.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 외 4개소)	선박 2척	한강대교 외4개소 우물통 보수공사	' 18.03.19.~ ' 18.12.31.	' 18. 03.1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64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철도교)	선박 2척	경부선 용산-노량진간 한강철도교 D선 점검	' 18.04.14.~ ' 18.04.20.	' 18. 03.19.

◆ **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18-65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동호대교)	선박 2척	동호대교 정밀안전진단	' 18.03.21.~ ' 18.04.04.	' 18. 03.19.

사업소공고**◆ 한강사업본부 공고 제2018-61호****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8.3.22. ~ 2018.4.4.(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8.4.5. ~ 2018.4.18.(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승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 목 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	성명/법인명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36	동반한 예언권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2018-01-30 14:23	독서한강공원 벽천나들목앞 잔디광장	50,000	민*숙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길 **	(자양동)
2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3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7-09-22 09:36	난지한강공원 도하장 내 (65 * 1400)	50,000	신*웅	기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	(문화동)
3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4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8-01-26 15:21	여의도한강공원 샛강공원 주차장 일구 100m (02 * 7156)	50,000	황*환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동 ***호 (자곡동, 강남한양수자인아 파트)
4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4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8-01-19 14:40	독서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앞 차도 내 (서울** * 4884)	50,000	김*철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나길 **	(면목동)
5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5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8-01-21 09:25	독서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서울광진*6045)	50,000	김*현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길 **	(자양동, 청정빌딩)
6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5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8-01-28 09:17	독서한강공원 독섬나들목 앞 인도 상 (서울광진 * 2408)	50,000	탁*도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호 (구의동, 현대아트빌라)
7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57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8-02-07 14:50	독서한강공원 자양중앙나들목 (서울광진 * 5042)	50,000	ZHAO *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라길 **	***호 (자양동)
8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5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7-07-12 23:34	잠실한강공원 잠실구역 2호 매점 옆 보도 (서울 송파 * 7585)	50,000	김*수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석촌동)
9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76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8-01-20 09:51	여의도한강공원 서울마리나 인근 낚시허용구역내 잔디밭 (서울구로* 4876)	50,000	JIN *MO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길 ***	(대림동)
10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8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8-01-21 13:20	독서한강공원 *향통제소 앞 (20*8100)	50,000	김*영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	****호 (금호동*가)
11	10-2887 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 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02	00038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8-01-19 15:35	독서한강공원 원드서평장 일구 (09*2221)	50,000	이*훈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다길 **	(자양동)

◆ 노원소방서 공고 제2018-8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정지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동 법 제41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며, 동 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노 원 소 방 서 장

1. 업무정지일 : 2018. 3. 19.(월)

2. 업무정지 대상자

연번	이 름	구 분	대 상 물	주 소	비 고
1	김영호	소방안전관리자	라이프 아파트 3단지 상가	노원구 섬밭로 125(공릉동 715)	
2	임창진	소방안전관리자	노원빌딩	노원구 상계로 75(상계동 336)	

3. 실무교육 미이수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 해당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979-7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 공고 제2018-1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송 파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등급 및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송파)- 2018-0001호 (2018.03.20.)	주식회사 동성방재 (215-87-57616)	김철술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30(석촌동) 크레송빌딩 5층	02-423-8927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송파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431-410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강동구 천호동 660-1번지
 - 면 적 : <당초> 7,511.93㎡ <변경> 7,515.89㎡, 일시 45.8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매설(매설배관 충격감지시스템 설치)
 - 내 역 :

당 초
○ 가스관 매설(φ600m/m) L=6,677.5m - 고수부지 구간 : 6,138m - 한강횡단 구간 : 390m - 제방횡단 구간 : 149.5m
변 경
○ 상동 ○ 매설배관 충격감지 시스템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4.1.12.~2019.1.11.(변경허가일로부터 2018.3.30.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1, 406, 415번지 (총 3필지)
 - 면 적 : 712㎡(일시 1,16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나들목 및 데크설치
 - 내 역 :
 - 나들목(L=41.0m, B=6.0m, H=3.5m) 1개소 및 데크(L=40m)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8.3.13.~2023.3.12.(2018.3.13.~2020.3.1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27-5, 627-6, 627-7, 627-8, 627-9, 627-10번지
(총 6필지)

- 면 적 : <당초> 599m² <변경> 884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공원 접근통로 설치
- 내 역 :

당 초
- 접근통로 박스 L=57.2m, B=4.0m - 경사로 1식 L=51.5m, B=4.0m - 계단 1개소 L=11.1m, B=4.0m
변 경
- 상 동 - 수변데크 L=40m, B=6~8.5m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변경허가일로부터 2018.3.31.까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